Ⅱ 대학현황

- 학칙
- 교무규정
- 채플과섬김 운영규정
- 교직과정 운영규칙
- 주요 학사제도

학 칙

[시행 2019.3.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백석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는 본 대학 설립정신에 따라 수요자중심의 교육과 수준 높은 연구 활동을 통하여 진리를 탐구하고, 학술을 진흥하며, 기독교 정신을 기반으로 인성과 지성을 겸비한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목표) 본 대학은 혁신적 지성 · 글로컬 소통 · 실천적 섬김의 역량을 갖춘 미래형 TOP인재 육성을 교육목표로 한다.

제3조(편제 및 정원) ① 본 대학에 설치하는 학부(과)편성 및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은 별표1과 같다.

② 본 대학에 전문대학원(기독교전문대학원)과 특수대학원(신학대학원, 보건복지대학원, 상담대학원, 교육대학원, 실천신학대학원, 문화예술대학원)을 서울에 두고 백석대학원이라 통칭하며, 대학원 학칙 및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장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제4조(수업연한) ① 본 대학의 수업연한은 4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복수 및 다중 전공자는 수업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소정의 졸업학점을 취득하고 졸업평가에 합격한 자로서 이수한 전교과목에 대한 성적이 평점평균으로 매학기 4.2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수업연한을 6개월 단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삭제

제3장 학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6조(학년 및 학기) ① 학년은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학년은 1년에 2개의 일반학기와 별도학기로 구성할 수 있다.
1. 제1학기: 3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
2. 제2학기: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3. 별도학기: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기간

③ 일반학기는 2주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기 개강할 수 있고, 별도학기의 추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일반학기 15주)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별도학기는 학점당 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일반학기와 연계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천재지변, 국가적 재난 등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경우 2주 이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하거나 수업방식 등에 대하여 총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8조(휴업일) ① 정기휴업일은 하계방학, 동계방학, 개교기념일 그리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한다.
② 휴업일이라도 필요한 때에는 실험, 실습 등을 과할 수 있다.
③ 임시휴업은 필요에 따라 총장이 정한다.
④ 비상재해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7조의 수업일수에도 불구하고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제4장 입학(재입학, 편입학 포함)과 전부(과)

제9조(입학시기)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 포함)을 허가하는 시기는 학기초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10조(입학자격)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1.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다만, 졸업예정자일 경우 예정일에 졸업하지 못한 자는 그 입학자격이 상실된다.
2. 고등학교 학력검정고시 합격자
3.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전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4.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제11조(입학지원절차) 입학지원자는 입학원서에 다음 서류와 소정의 고사료를 첨부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2. 출신학교 성적증명서
3. 기타 지정한 서류(모집 시에 공고)

제12조(입학정원) ① 입학지원자수가 입학정원을 초과할 때에는 선발고사를 실시하되 미달한 때에도 이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선발고사의 종목과 일시는 모집 시에 총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제13조(입학사정) 입학지원자에 대한 사정은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출신 고등학교 내신성적, 대학별 고사(필기, 실기 등)성적, 면접고사성적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및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 ① 대학입학전형제도의 계획 및 개발을 위하여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를 둔다.

③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및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를 총장 직속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입학허가 및 취소) ① 입학은 총장이 허가하며, 입학이 허가된 자는 지정기일 내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② 입학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입학 또는 졸업 후에라도 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한 서류와 기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입학 한 자 또는 재학 중인 자의 경우 등록금은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반환한다.

1. 지원자격을 위반한 경우
2. 지원자의 귀책사유로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및 각종 증명서 등 입학을 위하여 제출한 자료에 허위사실이 포함되었거나 변조하였을 경우
3. 평가자를 사전에 접촉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형 과정에 개입하여 공정한 학생 선발 업무를 방해한 경우
4.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입학한 경우

제16조(입학자의 구비서류 등) ① 입학(편입학 포함)이 허가된 자는 소정기일 내에 본 대학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납입금을 납부하는 것 외에 본 대학에

서 지시하는 모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절차를 소정기일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제17조(재입학) ① 자퇴한 자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원할 때에는 자퇴 또는 제적하였던 전공(과)의 동일학년 이하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모집이 중지된 전공(과)이나 본인이 전부(과) 재입학을 희망할 경우에는 심사에 의해 타 전공(과)으로 재입학 할 수 있다.
②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③ 재입학생이 이미 이수한 학점은 이를 통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제18조(편입학) ① 편입학은 정원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 제3학년 이상에 한하여 매학기초에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정원외로 제2학년 또는 제3학년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편입학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편입학 하고자 하는 해당학년의 전학년 수료자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이 일정기준 이상인 자
3. 기타 법령에 의하여 상기 제1호, 제2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으로 인정되는 자
③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사학위 소지자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위소지자는 입학정원 외로 제3학년에 편입학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학부(과)의 정원의 10% 이내이어야 하고 제3학년 입학정원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전적 대학에서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편입학 할 수 없다.
⑤ 편입학에 관한 세칙은 따로 정한다.

제19조(정원외 입학) ① 법령에 의한 정원외 입학대상자 및 외국인 학생은 소정의 평가를 거쳐 입학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학생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 학칙을 준용한다.

제20조(전부(과)) 전부(과)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삭제

제21조(보증인) ① 보증인은 당해 학생의 학부형이어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에는 재학중 학비, 기타 신상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질 수 있는 자로 한다.
② 보증인의 주소 및 신상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5장 등록 및 수강신청

제22조(등록) ① 학생은 매학기 소정의 기일 내에 소정의 절차에 의한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등록은 수강신청과 소정의 납입금의 납부로서 완료된다.

제22조의2(장애학생 학점등록) ①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에 대하여는 학점등록을 허가할 수 있으며, 신청학점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납부토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의 장애학생 인정과 학점등록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23조(수강신청) ① 학생은 매학기 마다 소정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수강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의2(석사학위과정 교과목 수강) ① 제4학년 학생 중 직전학기까지 이수한 전교과목에 대한 성적이 평점평균으로 매학기 4.2 이상인 자로서 석사 학위 과정의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6학점 범위 내에서 대학원 강의를 수강할 수 있으며 이때 취득한 학점은 석사학위과정 졸업(수료)학점에 산입할 수 있다.
② 석사학위과정 교과목 수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의3(수시모집 입학확정자의 교과목 수강) ① 수시모집 입학확정자가 예비대학 개설 교과목을 이수하여 취득하는 학점은 4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② 수시모집 입학확정자의 교과목 수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의4(연계교육과정 이수자의 교과목 수강) ① 연계교육과정 이수자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본 대학 개설 교과목을 이수하여 취득하는 학점은 10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② 연계교육과정 이수자의 교과목 수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장 휴학, 복학, 자퇴 및 제적

제24조(휴학) ① 학생이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휴학신청의 시기에 따라 휴학자의 등록금 인정액이 달라질 수 있다.
② 일반휴학은 1년 이하로 하며 통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일반휴학 통산 4개 학기를 휴학한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기간을 추가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군입대휴학, 창업휴학, 임신 · 출산 · 육아휴학 등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⑤ 창업휴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5조(복학) ① 휴학한 자는 그 기간 만료 또는 사유종료와 동시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복학하여야 한다.

② 군제대 일자가 수업일수의 4분의 1이내일 경우 또는 소속부대장의 휴가 또는 수강허가 등으로 사실상 복학허용 마감일 이전부터 출석이 가능한 경우에는 전역예정증명서, 수강허가증 또는 휴가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26조(자퇴) 자퇴를 원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지도교수와 소속 학부장을 경유,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27조(제적)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할 수 있다.

1.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의 기한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삭제〉
3.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4. 이중학적을 가진 자
5. 재학 중 연속 3회 학사경고를 받은 자
6. 삭제
7. 사망, 질병 기타 학업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8. 기독교 진리에 위배되고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제7장 교과 및 이수

제28조(교과목 구분) 교과목은 교양과목, 교직과목, 전공과목, 학부(과) 기초 교과목으로 구분한다.

제29조(교과 이수단위) 교과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한 학기당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제30조(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본 대학의 설립정신에 따라 재학기간 동안 매학기 채플과 섬김 교과, 기독교세계관 교과, 종교적 가치 이해 교과 등 기독교 인성 관련 교과목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한다.

③ 공학교육의 발전과 우수한 공학도 양성을 위하여 공학교육인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 산학일체형 교육을 위해 산업체와의 협약에 의한 사회맞춤형(학과) 교육과정을 개발·운영 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⑤ 4차 산업시대를 선도할 인재 양성을 위하여 혁신융합학부를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0조의2(연계교육과정) ① 고등학교, 전문대학, 산업대학 또는 기타 교육기관 등과 상호 협약에 의하여 연계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연계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0조의3(비정규 특별교육과정) ① 본 대학에 이미 설치된 학과 및 전공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분야에 비정규 특별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비정규 특별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0조의4(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외국의 대학과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설치 범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0조의5(평생학습 교육과정 운영) ① 성인학습자를 위한 평생학습 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평생학습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학점은행제 과정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적용의 배제)를 제외한 운영규정을 준수한다.

제30조의6(나노디그리 운영) ① 학부 또는 전공(과)는 전공 내 또는 타전공 간의 융복합을 통한 나노디그리(Nano-Degree)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나노디그리(Nano-Degree) 과정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1조(수업시간표) 매학기 수업시간표는 수업이 개시되기 전에 공시한다.

제32조(학기당 수강학점) ①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학기당 학점을 수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8학차 이상의 학생은 19학점 이하로 한다.
1. 일반학기: 12학점 이상 19학점 이하
2. 별도학기: 6학점 이하
② 본 대학이 인정한 타 기관에서 최득한 학점, 특별학점 등은 예외로 한다.
③ 삭제

제33조(특별학점 인정) ① 본 대학에서 인정하는 국가 및 민간 자격증 취득과 국가시험 합격자 또는 학점취득을 위한 특별시험, 국가 공인 어학능력시험에서 일정 수준의 점수를 취득한 자에게는 학점을 인정하고 관련 교과목의 수강을 면제할 수 있다.
② 본 대학과 국가 및 산업체 또는 관련기관과의 협약 등에 의한 프로그램에 따라 교과목을 이수한 자에게는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③ 특별학점은 8학점 이내에서 인정하며, 제32조제1항의 학기당 취득학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과 특별학점 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3조의2(현장실습 학점인정) ① 본 대학이 인정하는 산업체 등 국내·외 기관에서 현장실습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소정의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② 현장실습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3조의3(학점의 인정 등) ① 본 대학이 학생(학점)교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거나 본 대학에서 인정하는 국내·외 다른 대학에서 개설한 교과목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은 본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병역법」에 의하여 입영 또는 복무중인 자가 해당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 과정 중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은 매 학기 3학점 이내에서 본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병역법」에 의하여 입영 또는 복무중인 본 대학의 휴학생이 본 대학에서 제공하는 원격수업 수강신청을 하고 이수한 과목의 학점은 매 학기 6학점이내에서 등록할 수 있다.
④ 본 대학 입학 전, 국내 고등학교 재학중 대학과목선이수제를 통하여 취득한 과목의 학점은 2과목 6학점 이내에서 본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 창업, 평생교육, 온라인 공개강좌 등에 관한 학점인정의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⑥ 본 대학에서 개설한 교과목의 수강학점을 제외한 학점의 인정은 졸업학점의 1/2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외국대학과의 공동·복수학위과정의 경우에는 3/4까지 인정할 수 있다.

제8장 부전공, 융합전공, 복수전공, 기타 전공 등의 이수

제34조(부전공) ① 주전공 이외에 다른 전공 분야의 전공과목을 소정의 절차를 밟아 학점을 취득한 자에게는 부전공 이수를 인정하고 학적부와 학위증서에 이를 표시한다.
② 부전공 신청, 자격, 이수, 학점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5조(복수·다중·융합·기타 전공) 복수 및 다중, 융합, 기타 전공의 인정을 위한 이수학점, 졸업성적,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삭제

제35조의2(전공예약제 입학생의 전공이수) 전공예약제로 입학한 학생은 입학당시의 전공을 제1전공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제9장 시험 및 성적

제36조(시험) 시험은 매학기 수시시험 및 기말시험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7조(출석) 학생은 각 교과목별로 총 수업시간의 4분의 3 이상을 출석하여야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제38조(추가시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고로 인하여 시험에 응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추가 시험원을 제출하여 학부(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으로 사전에 이를 승인 받지 못한 자는 사유종료 직후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승인 받을 수 있다.

제39조(성적평가) ① 학업성적은 시험성적, 과제물 평가, 출석상황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다만, 실험·실습 및 특수한 과목의 성적은 따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총장이 지정하는 교과목에 대하여는 합격 여부만 구분하여 P(급) 또는 F(낙)로 표시하며, 평점은 부여하지 않는다.

③ 각 과목별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되, D 이상과 P일 때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등 급	평 점	등 급	평 점
A+	4.5	D+	1.5
A	4.0	D	1.0
B+	3.5	F	0
B	3.0	P	
C+	2.5		
C	2.0		

④ 이미 이수한 과목을 재이수하고자 할 때는 재이수 신청을 하여 이미 취득한 학점을 취소하고 재이수 할 수 있으나, 취득한 성적이 D+ 이하 과목만 재이수 할 수 있다.

⑤ 대학예배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0조(학사경고) ① 일반학기 성적의 평점평균이 1.5 미만인 자에게 학사경고를 과한다. 다만,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이수하는 학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학생에게는 학부(과)장 및 지도교수가 수강신청 학점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학사경고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장 수료 및 졸업

제41조(졸업) 졸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학위증서를 수여한다.

1. 본 학칙에서 정한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고 전체성적의 평점평균이 1.5 이상인 자
2.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학위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가. 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이 84학점 이상인 자로서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 취득학점이 140학점 이상이고 이중 전공 60학점 이상, 교양 3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나.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본 대학에서 해당전공학점으로 48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으로부터 학점을 인정받은 후 학위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본 대학에 제출한 자
   라. 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에는 정규 교육과정에서 취득한 학점, 시간제 등록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을 포함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학위수여요건을 충족한 경우 총장은 학위수여예정자 명단, 학칙 사본 및 학위증 사본을 학위수여 예정일 21일 이전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에게 통보하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으로부터 학위수여요건 해당자로 통보 받은 경우에 한하여 학위를 수여한다.

제42조(학위수여) 졸업자에게는 별표2에 의한 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학위를 수여할 경우 학위의 종류 및 전공은 표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하되, 유사할 경우 본교 학위종류 및 전공에 따라 학위를 수여하며, 유사성 판단은 유사전공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다. 유사전공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3조(졸업 및 수료학점) 졸업 및 수료 기준학점의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4조(학년수료증서) 해당학년까지 소정의 등록과 학점을 취득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수료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제45조(졸업평가 및 졸업인증) ① 졸업예정자는 졸업평가에 합격하여야 한다. 학부(과)의 특성에 따라서 졸업평가를 졸업시험, 졸업논문, 실험실습보고, 실기발표 등으로 할 수 있다.

② 졸업평가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본 대학에서는 졸업인증제를 시행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장 공개강좌

제46조(공개강좌) ① 교양, 학술 또는 실무에 관한 이론과 기술을 보급하기 위하여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② 공개강좌에 관한 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장 특례입학

제47조(외국인학생 등) 재외국민 및 외국인, 해외교포 및 외교관자녀, 본 대학의 총장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의 학생,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등에게는 정원외로 입(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48조(준용규정) 외국인 등 특례 입(편입)학한 학생에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학칙을 준용한다.

제13장 등록금

제49조(등록금) 학생은 매학기초 등록 시에 수업료, 기타의 납입금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50조(입학금) 입학(편・재입학 포함)이 허가된 자는 제49조에 규정된 등록금과 함께 입학금을 소정의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1조(등록금 등의 감면) ① 총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품행이 단정하며 가계가 곤란한 자에게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금, 입학금을 면제 또는 감면 할 수 있다.
② 등록금, 입학금은 결석, 출석정지, 정학 또는 기타 징계 등의 사유로 인하여 감면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52조(등록금의 반환) 등록금의 반환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장 학생활동

제53조(학생회) ① 본 대학의 설립정신에 따라 기독교정신의 토대위에서 학풍을 조성하고 건전한 자치활동을 통해 지도자적 인격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연마하기 위해 백석대학교 학생회(이하 "학생회"라 칭한다)를 둔다.
② 학생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학생회칙으로 따로 정한다.
③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에는 그 활동이 정지된다.

제54조(회원 자격) 학생은 학생회의 회원이 되며 제적 또는 퇴학과 동시에 학생회 회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다만, 휴학 및 근신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 동안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55조(지도교수의 학생지도) ① 학업 및 학생생활을 지도하기 위하여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② 지도교수는 총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지도할 의무가 있으며 학칙위반자에 대하여는 특별지도를 통한 문제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56조(학생지도위원회) ① 학생자치 활동의 원활한 운영과 학생지도를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둔다.
② 학생지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7조(금지활동) ① 학생은 학교내외를 막론하고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정치적 활동을 하거나 단체에 가입할 수 없으며 수업, 연구 등 학교의 기본 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학생은 성차별 및 성희롱·폭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한다.
1. 성별의 차이를 이유로 기회의 공정성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학생 간 또는 학생, 교·직원 간 대인관계 시, 성적 언동 등으로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행위
3. 이성을 열등한 성으로 보는 언행이나 성적대상으로 표현하는 행위

제58조(학생단체의 승인) 학생회 이외의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9조(활동의 사전승인) ①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교내 외 10인 이상의 집회
2. 교내 광고 인쇄물의 부착 또는 배부
3.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요청 또는 시상의뢰
4. 외부인사의 교내 초청

② 전항 제1호의 집회에 관하여는 목적, 개최일시, 장소 및 참가예정 인원 등에 대하여 사전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0조(간행물의 지도와 승인)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 부정기 간행물은 지도교수(지도위원)의 추천과 총장의 승인을 얻어 발행하며, 간행물의 편집은 총장이 위촉하는 약간 명의 지도교수(지도위원)가 지도하고 인쇄된 간행물은 배포 전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장 열린교육

제61조(열린교육) 본 대학은 학생 또는 일반사회인을 대상으로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다양한 열린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2조(위탁생) ① 정부 각 부처 또는 자치 단체의 재직자로서 그 소속장의 위탁이 있을 때에는 정원외로 입학할 수 있다.

② 위탁생이 수학 중 그 소유 기관의 직을 떠났을 때에는 제적한다.

③ 위탁생에 대하여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이 학칙을 준용한다.

제62조의2(시간제등록생) ① 본 대학은 일반 사회인에게 재교육 및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설된 학부(과)에 한하여 시간제등록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간제등록제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인정자로 한다.

③ 시간제등록생의 선발인원은 재학생과 통합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과 시간제등록생만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을 각각 구분하여 해당 연도 총입학정원의 100분의 10 이하로 각각 선발한다.

④ 시간제등록생 선발은 사범학부 및 보건학부를 제외한 학부를 모집단위로 선발하며, 정규학생과 통합하여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과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으로 구분하여 선발할 수 있다.

⑤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의 수업일수는 4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⑥ 시간제등록제로 선발된 자는 소정 기간 내에 수강신청과 책정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⑦ 시간제등록생은 계절학기를 포함하여 매 학기 12학점 및 연간 24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⑧ 기타 시간제등록생의 선발방법, 수업방법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3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운영) ① 본 대학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등과 계약에 의하여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학부(이하 "계약학과 등"이라 하며 산업체 위탁교육과정을 포함함)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계약학과 등은 당해 계약기관 또는 본 대학 및 본 대학의 법인시설(천안, 서울)등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계약학과 등의 학생 수 및 학생 정원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④ 계약학과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장 장학금

제64조(장학금의 지급)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 또는 학비조달이 곤란한 자에 대하여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5조 〈삭제〉

제66조(장학세칙)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칙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장 규율, 포상 및 징계

제67조(규율) 본 대학의 학생은 기독교인으로서 단정한 태도와 성실한 자세로 학업에 임하여야 하고, 학교가 정하는 제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장래 국가 및 인류사회에 봉사할 유능한 지도자로서의 자질 함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68조(포상) 학생 중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와 특히 선행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포상할 수 있다.

제69조(징계) ① 총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교무위원회 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 처분할 수 있다.

1. 품행이 불량하고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자
2. 학업이 열등하며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자
3.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이 불량한 자
4.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자
5. 기타 학칙 또는 제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으로 구분한다.

③ 교무위원회 또는 학생지도위원회에서는 징계대상자를 출석시켜 사실을 청취할 수 있다.

제70조(조직 및 직제) 본 대학의 조직 및 직제는 따로 정한다.

제70조의2(산학협력단) ① 본 대학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을 둘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0조의3(학교기업 설치 · 운영) ① 본 대학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한 학교기업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② 학교기업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0조의4(학교기업의 현장실습 활용) ①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에 대하여 총 30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단, 1개학기당 인정학점은 15학점 이내로 한다.

②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 학점인정은 1학점당 30시간 이상의 현장실습을 원칙으로 한다.

③ 기타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교육에 대한 사항은 「현장실습 및 취업연수 학점인정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70조의 5(학교기업의 보상금 지급기준) ① 학교기업 운영성과 결산 결과 순이익 발생 시 순이익의 20% 범위 이내에서 순이익 발생에 직접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② 교직원 1인당 연간 보상금은 순이익의 5%를 넘을 수 없다.

③ 학생에 대한 보상금은 장학금 형태로 지급하되, 1인당 연간 등록금 총액을 넘을 수 없다.

④ 제2항,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 수행을 위하여 교직원 또는 학생이 특허 등 지적

재산권을 제공한 경우와 학칙에서 정하지 않은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0조의6(협력연구소 설치 · 운영) ①「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 대학의 교지 안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이 운영하는 연구소(이하 "협력연구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협력연구소 설치 ·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0조의7(자체평가)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 · 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대학운영 전반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며, 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0조의8(사회봉사 및 장애학생지원) 본 대학은 사회봉사 및 장애학생지원을 위한 조직체계를 구축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장 교수회

제71조(구성) ① 본 대학의 학사에 관한 중요사항과 총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 교수회를 둔다.
② 교수회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과 교무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밖의 교 · 직원도 참석시킬 수 있다.

제72조(소집) 교수회는 총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73조(성립) 교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제74조(심의) 교수회는 총장의 자문에 응하여 주요사항을 심의한다.

제20장 교무위원회

제75조(교무위원회) ① 본 대학의 교무운영 전반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② 교무위원회 위원장은 총장이 되고, 위원은 처 · 실장급 이상의 교 ·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필요할 경우 약간 명의 교 · 직원을 추가로 참석시킬 수 있다.

제76조(기능) 교무위원회는 총장의 자문에 응하여 본 대학의 교육 전반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한다.

제21장 대학평의원회

제77조(대학평의원회 구성) 대학평의원회는 교원·직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11인의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제78조(대학평의원회 기능) 대학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부터 제5호의 경우 자문에 한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9조(대학평의원회 운영) 대학평의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장 등록금심의위원회

제80조(등록금심의위원회) ① 대학의 등록금 책정 심의를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장 부속시설

제81조(부속시설 및 부설기관) ① 본 대학에 부속시설로 개혁주의생명신학실천원(서울), 교수학습개발원, 교육성과관리센터, 군선교지원센터, 글쓰기클리닉센터, 기독교대학실천원(천안), 기독교박물관, 기독교인문학연구소, 기독교학부실습관, 대학일자리센터, 대학평가원, 도서관, 도서관(서울), 링크플러스사업단, 백석생활관, 백석실버센터, 백석역사관, 백석연구소, 백석연수원, 백석합창단, 보건실, 보리생명미술관, 사범학부실습관, 사회봉사센터, 아동가족상담클리닉, 예비군연대본부, 유관순연구소, 인성개발원, 장애학생지원센터, 전략추진원, 전산정보원,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창업교육센터, 창업보육센터, 창업지원단, 커리큘럼인증센터, 평생교육원, 평생교육원(서울), 학생군사교육단, 학생생활상담센터, 한국어교육센터, 현대시100년관, 현장실습지원센터, PBL지원센터를 두고,

부설기관으로 백석대학교회(천안·서울)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부속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4장 교원

제82조(교원의 교수시간) 본 대학 교원의 교수시간은 따로 정한다.

제83조(특별교원) 본 대학에는 특별교원을 둘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5장 학칙개정

제84조(학칙 개정절차) 이 학칙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개정한다.
1. 학칙 개정안 작성 및 공고: 기획처장은 각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내용을 검토한 후 학칙 개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7일 이상 공고한다. 다만, 개정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을 요하는 경우, 관련 법령이 개정된 경우 등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심의 및 공포·시행: 학칙 개정안은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공포·시행한다.

제85조(시행세칙) 이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학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3조 1항 및 제42조의 규정은 1997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학칙 제3조 제1항은 199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고 이전 입학자(학번자)는 개정전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이 학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1999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학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복학자의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재학했던 자의 복학에 있어 당초 소속되어 있는 재학 당시의 모집단위가 야간학부(과)에서 주간학부(과)로 전환되었거나 학부(과)의 폐지, 통합, 명칭, 계열 등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제3조 ①항의 편제로 인정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③(재입학자의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제적된 자가 재입학에 있어 제적 당시의 모집단위가 야간학부(과)에서 주간학부(과)로 전환되었거나 통합, 명칭, 계열 등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제3조제1항의 편제로 인정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0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1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1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2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3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학칙 제70조의 3에서 정한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은 2004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경상학부 경영정보학전공자는 e-비즈니스학전공으로, 정보통신학부 정보처리학전공자, 사이버상거래학전공자는 각각 소프트웨어학전공, 정보보호학전공으로, 정보통신학부의 컴퓨터애니메이션학전공자, 산업정보디자인학전공자, 인터넷정보디자인학전공자는 각각 디자인영상학부의 영상애니메이션전공, 시각정보디자인전공, 인터랙티브미디어전공으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입학당시의 전공명을 희망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부 칙

이 학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4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기독교학부 교회비서행정학전공자는 기독교비서학전공으로, 교회실용음악학전공자는 기독교실용음악학전공으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입학당시의 전공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부 칙

이 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학칙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법정학부 경찰행정학전공자는 경찰학전공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단, 입학당시의 전공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천안대학교 재적생은 이 학칙에 의하여 백석대학교의 재적생으로 본다.

②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 학칙의 교명으로 수여된 졸업장 또는 학사 학위는 각각 이 학칙의 교명으로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한국실천목회연구소 설치는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과 동시에 2009년 2월 기독교학부 기독교실용음악학전공 졸업자부터는 음악학사 학위를 수여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학칙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기독교학부 기독교실용음악학전공은 기독교실용음악전공으로, 기독교미술학부 기독교회화학전공은 기독교회화전공으로, 기독교인테리어디자인학전공은 기독교인테리어디자인전공으로, 기독교공예학전공은 기독교공예전공으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별지서식 1의 학위증서는 2007학년도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공 및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2005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디자인영상학부 인터랙티브미디어전공자 중, 2009년 2월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산업디자인전공 소속으로 한다.
② 2008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기독교학부 선교학전공자 중 2012년 8월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기독교학부 언론선교학전공 소속으로 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학칙 제3조제1항의 [별표 1]은 2010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제2조(학부 · 전공 통폐합 및 명칭변경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학부(전공)에 소속된 학생 중 2010년 3월 1일 이후 복학하는 학생과 2013년 8월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변경한다.
1. 법정학부는 법정경찰학부로 변경한다.
2. 기독교학부 기독교실용음악전공은 기독교문화예술학부 기독교실용음악전공으로 변경한다.

3. 기독교미술학부 기독교회화전공, 기독교인테리어디자인전공, 기독교공예전공은 기독교문화예술학부 조형회화전공, 인테리어디자인전공, 공예디자인전공으로 각각 변경한다.
4. 음악학부 피아노전공은 기독교문화예술학부 피아노전공으로 변경한다.
②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음악학부 관현악전공, 성악전공, 작곡전공, 컴퓨터음악전공의 재학생이 졸업하는 연도까지 존속하되, 학생이 전과를 원하는 경우 여석이 있는 전공으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부 칙

이 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학칙 제3조제1항의 별표 1은 2001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제2조(전공 명칭변경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1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정보통신학부 컴퓨터학전공자 중 2014년 8월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모바일컴퓨팅학전공 소속으로 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1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학칙 제80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하고, 제3조제1항의 [별표 1]은 2012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과 동시에 2016년 2월 기독교학부 기독교교육학전공 졸업자부터는 신학사 학위를 수여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학칙 제3조제1항의 [별표 1]은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제2조(전공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기독교문화예술학부 공연예술전공은 해당전공의 재학생이 졸업하는 연도까지 존속하되, 학생이 전과를 원하는 경우 여석이 있는 전공으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학칙 제3조제1항의 [별표 1]은 2014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고, 제42조의 [별표 2]는 2014년 3월 이후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제2조(학부·전공 통폐합 및 명칭변경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당시 재적생의 소속학부 또는 전공을 2014년 3월 1일부터 다음 각 호와 같이 변경한다.

1. 기독교문화예술학부는 문화예술학부로 변경한다.
2. 디자인영상학부 시각정보디자인전공은 디자인영상학부 시각디자인전공으로 변경한다.
3. 디자인영상학부 방송미디어영상전공은 문화예술학부 방송영상전공으로 변경한다.
4. 기독교문화예술학부 인테리어디자인전공과 공예디자인전공은 디자인영상학부 인테리어디자인전공과 공예디자인전공으로 각각 변경한다.

② 전공이 폐지된 경상학부 e-비즈니스학전공, 관광학부 관광통역전공, 기독교문화예술학부 조형회화전공은 재적생이 졸업하는 연도까지 존속하되, 학생이 전부(과)를 원하는 경우 심사하여 허락할 수 있다.

부 칙

이 학칙은 2014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4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5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6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부 및 전공 명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의 학부 또는 전공의 명칭을 2017년 3월 1일부터 다음 각 호와 같이 변경한다.

1. 법행정경찰학부는 경찰학부로 변경한다.
2. 기존 법행정경찰학부의 경찰학전공은 경찰행정학전공으로 변경하고, 법학 및 행정학전공은 재적생이 졸업하는 연도까지 존속하되, 학생이 전부(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사를 거쳐 허락한다.
3. 문화예술학부의 연극영화전공은 연기예술전공으로, 성악 · 뮤지컬전공은 뮤지컬전공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공 명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의 전공의 명칭을 2018년 3월 1일부터 기독교학부의 선교학전공은 미디어선교학전공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8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부 및 전공 명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의 학부 또는 전공의 명칭을 2019년 3월 1일부터 다음 각 호와 같이 변경한다.

1. 정보통신학부를 ICT학부로 변경한다.
2. 경찰학부의 교정보호학전공은 교정보안학전공으로, ICT학부의 전자제어학은 인공지능제어학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20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20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학부(과)편성 및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계 열	학부 및 학과명		입 학 정 원			
			2017학년도	2018학년도	2019학년도	2020학년도
인문·사회계열	기독교학 부	신학전공 선교학전공 기독교교육학전공 기독교상담학전공	180	–	–	–
	기독교학 부	신학전공 미디어선교학전공 기독교교육학전공 기독교상담학전공	–	180	165	165
	어 문학 부	국어국문학전공 영어학전공 일본어학전공 중국어학전공	200	180	140	140
	사 회복 지학 부	청소년학전공 아동복지학전공 사회복지학전공 노인복지학전공	345	299	299	299
	법행정경 찰학 부	법학전공 행정학전공 경찰학전공	–	–	–	–
	경 찰학 부	경찰행정학전공 범죄학전공 교정보호학전공	150	150	–	–
	경 찰학 부	경찰행정학전공 범죄학전공 교정보안학전공	–	–	128	128
	경 상학 부	경영학전공 회계학전공 국제통상학전공	247	210	170	170
	관광학부	관광경영학전공 호텔경영학전공	160	160	–	–
		항공서비스전공	80	80	–	–
	관광학부	관광경영학전공 호텔경영학전공	–	–	160	160
		항공서비스전공	–	–	80	80
		글로벌호텔비즈니스전공	–	–	40	40
	사범학부	유아교육과	70	70	70	70
		특수교육과	60	60	60	60
		유아특수교육과	40	40	40	40
자연계열	정보통신학부	소프트웨어학전공 멀티미디어학전공 정보통신학전공 정보보호학전공 전자제어학전공	300	300	–	–

계 열	학부 및 학과명		입 학 정 원			
			2017학년도	2018학년도	2019학년도	2020학년도
자연계열	정보통신학부	소프트웨어학전공 멀티미디어학전공 정보통신학전공 정보보호학전공 전자제어학전공	300	300	–	–
	ICT학부	소프트웨어학전공 멀티미디어학전공 정보통신학전공 정보보호학전공 인공지능제어학전공	–	–	300	300
	보건학부	물리치료학과	38	48	53	53
		안경광학과	40	63	63	63
		응급구조학과	30	32	52	52
		간호학과	100	140	140	140
		치위생학과	35	43	65	65
		작업치료학과	40	60	90	90
예·체능계열	사범학부	특수체육교육과	40	40	40	40
	디자인영상학부	영상애니메이션전공 시각디자인전공 산업디자인전공 인테리어디자인전공	265	265	265	265
	스포츠과학부	레저스포츠산업전공 스포츠건강관리전공 유소년스포츠전공 골프전공 태권도전공	–	–	–	–
	스포츠과학부	레저스포츠산업전공 스포츠건강관리전공 유소년스포츠전공 골프전공	140	120	–	–
		태권도전공	20	40	–	–
	스포츠과학부	레저스포츠산업전공 스포츠건강관리전공 유소년스포츠전공	–	–	120	120
		태권도전공	–	–	40	40
	문화예술학부	연극영화전공	–	–	–	–
		피아노전공	–	–	–	–
		성악뮤지컬전공	–	–	–	–
		실용음악전공	–	–	–	–
	문화예술학부	연기예술전공	60	60	60	60
		피아노전공	30	30	30	30
		뮤지컬전공	40	40	40	40
		실용음악전공	80	80	80	80
합 계			2,790	2,790	2,790	2,790

[별표 2]

학위종별 학부(과)

학위종별	학부(과)
신학사	기독교학부(신학전공, 미디어선교학전공, 기독교교육학전공)
문학사	기독교학부(기독교철학전공, 기독교상담학전공, 기독교복지학전공), 어문학부(국어국문학전공, 영어학전공, 일본어학전공, 중국어학전공, 러시아어학전공), 사회복지학부(청소년학전공, 아동복지학전공, 사회복지학전공, 노인복지학전공, 재활복지학전공)
행정학사	기독교학부(기독교비서학전공), 경찰학부(행정학전공)
법학사	경찰학부(법학전공)
경찰범죄심리학사	경찰학부(범죄학전공)
경찰교정보안학사	경찰학부(교정보안학전공)
경영학사	경상학부(경영학전공, 회계학전공, e-비즈니스학전공, 국제통상학전공)
교육학사	사범학부(유아교육과, 특수교육과, 유아특수교육과)
공학사	ICT학부(컴퓨터학전공, 소프트웨어학전공, 멀티미디어학전공, 정보통신학전공, 정보보호학전공, 전자제어학전공, 인공지능제어학전공, 모바일컴퓨팅학전공)
체육교육학사	사범학부(특수체육교육과)
음악학사	문화예술학부(피아노전공, 공연예술전공 성악·뮤지컬, 공연예술전공 실용작곡, 실용음악전공, 성악·뮤지컬전공)
디자인학사	디자인영상학부(영상애니메이션전공, 시각디자인전공, 산업디자인전공, 인테리어디자인전공, 공예디자인전공)
경찰학사	경찰학부(경찰행정학전공)
관광경영학사	관광학부(관광경영학전공, 호텔경영학전공, 항공서비스전공, 글로벌호텔비즈니스전공)
관광통역학사	관광학부(관광통역전공)
보건학사	물리치료학과, 안경광학과, 응급구조학과, 작업치료학과
간호학사	간호학과
미술학사	문화예술학부(조형회화전공)
치위생학사	보건학부(치위생학과)
체육학사	스포츠과학부(레저스포츠산업전공, 스포츠건강관리전공, 유소년스포츠전공, 골프전공, 태권도전공)
예술학사	문화예술학부(연기예술전공, 방송영상전공, 뮤지컬전공)

※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학위명 이외에 별도의 프로그램 명칭 등을 표기할 수 있다.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위는 음악학사(피아노, 실용음악학전공), 관광경영학사(관광경영학, 호텔경영학전공), 문학사(사회복지전공, 청소년학전공, 아동복지학전공)만 수여할 수 있다.
※ 혁신융합학부의 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한 경우, 학위명은 전공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별지서식 1]

제 호

학 위 증 서

성 명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학사의 자격을 취득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함.

전 공 : 0 0 0 전공 (0 0 학사)
0 0 0 전공 (0 0 학사)
0 0 0 전공 (0 0 학사)

부전공 : 0 0 0 전공

Nano-Degree : 0 0 0 프로그램

년 월 일

백 석 대 학 교 총 장

(학 위) 성명 직인

학위번호 : 백석대 ○○○○ - 학 - ○○○○

[별지서식 2]

제 호

수 료 증 서

성 명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 부(과) 전공 학년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백 석 대 학 교 총 장 직인

[별지서식 3]

제 호

학 위 증

성 명 :

생년월일 :

전 공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9조 및 학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 )의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백 석 대 학 교 총 장

학위번호 : 백석대학교 학점 _____

교무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백석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 학칙에 규정된 교무 및 학사 등의 행정 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본 대학 교무 및 학사 행정 업무에 관하여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2장 등 록

제3조(등록) ① 매 학기별 지정된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함으로써 학생의 신분을 유지한다.

② 학생은 매학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수업을 수강할 수 없다. 다만, 등록연기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연기기간까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등록금 반환

제4조(등록금의 납입 의무) 입학(편입학, 재입학 포함)이 허가된 자는 소정의 등록금을 지정된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결석 또는 정학자 등록금) 등록금은 결석, 정학 또는 제적의 이유로 감면되지 아니한다.

제6조(등록금 반환) ① 납부한 등록금과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입학포기, 자퇴, 미복학 제적, 사망,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교육부령)」의 관련 조항을 적용한다.

③ 과오납의 경우 과오납된 금액 전액을 반환한다.

제4장 수강신청

제7조(수강 신청) ① 수강 신청은 매 학기 지정된 기간에 다음 학기 이수할 과목의 수강 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교육과정 및 수업시간표를 참고하여 교양 및 전공학점 이수 누락 여부 등을 확인하고 수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등록금을 납입한 재학생이 수업일수 4분의 1선까지 수강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학기 성적은 교양과목 중 4학점을 "F" 로 처리한다.

제8조(수강 신청 절차) ① 소속 학부(과)에서 수업시간표 안내를 받는다.
② 수강신청 입력 안내를 읽고 숙지한다.
③ 수업시간표에 의해 이수할 과목을 선정하고, 수강신청 절차에 의하여 본인이 직접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확히 입력한다.

제9조(수강 신청 지도 및 처리) ① 평생담임교수와 학부장은 소속 학부 학생의 수강신청을 지도하여야 한다.
② 학사 경고, 편입학, 전부(과), 재입학, 복학한 학생에 대하여 수강 과목 및 수강학점 등을 특별 지도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수강 신청 학점) ① 매 학기 수강 신청 권장 학점은 12학점 이상 19학점 이하로 한다.
② 4학년의 매 학기 최소 신청 권장 학점은 9학점으로 한다.
③ 15학점 미만 신청자(4학년의 경우 12학점 미만 신청자)는 성적순에 의하여 지급되는 장학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사회봉사활동 교과목을 수강신청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20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⑤ 직전학기 성적의 평점평균이 4.3 이상인 자는 2학점까지 추가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⑥ 특별학점 인정 및 교육봉사활동으로 취득한 학점은 해당 학기 수강신청 학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⑦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되어 선수촌에 입촌한 학생은 이동수업으로 학기당 15학점까지 수강신청 할 수 있다.
⑧ 군사학 교과목을 수강 신청하는 학군사관후보생의 경우에는 해당학기 군사학 학점만큼 추가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석사학위과정 교과목 수강) ① 제4학년 학생 중 직전 학기까지 이수한 과목에

대한 성적이 평점 평균으로 매 학기 4.2 이상인 자로서 본 대학 석사학위 과정의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수강신청 기간 중에 소속 학부장과 대학원 교과목 담당교수의 승인을 받아 학기당 6학점까지 석사학위과정의 교과목을 수강 신청할 수 있다.
② 본인의 졸업학점을 충족하고, 추가로 석사학위과정 교과목의 학점을 취득한 자가 본 대학 석사학위과정에 입학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항에 의거 취득한 학점을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대학원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③ 석사학위과정에서 취득한 교과목은 교양과목으로 인정한다.

제12조(수시모집 입학확정자 교과목 수강) ① 수시모집 입학확정자가 예비대학 개설 교과목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은 4학점 이하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인정된 학점은 입학 후 일반학기와 별도로 표기한다.
③ 입학확정자가 학점 인정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13조(연계교육과정 이수자 교과목 수강) ① 연계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본 대학 개설 교과목을 수강하여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② 수강신청 및 이수대상은 연계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중 2학년에 한한다.
③ 이수 및 인정학점은 학기당 5학점 이하(전공 및 교양 각각 1과목)로 하며, 총 10학점까지 인정한다.
④ 취득한 학점은 편입학과 동시에 졸업이수학점에 포함할 수 있다.

제14조(실험실습비) 본 대학에서 지정한 실험실습 과목을 신청할 경우, 실험실습비 등록기간 내에 소정의 실험실습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수강 신청 정정) ① 수강신청한 과목은 임의로 정정하거나 취소할 수 없으며,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수강한 과목의 성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② 수강신청한 과목의 정정 및 취소는 교무처에서 정하는 기간에 할 수 있다.
③ 수강신청 과목의 정정 및 취소는 시간표의 변경, 폐강과목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제16조(수강 신청 과목 철회) ① 수강 신청 과목을 계속 이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무처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2과목에 한하여 해당 과목 담당 교수, 주임교수,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과목을 철회할 수 있다.
② 수강 신청 과목을 철회했을 경우, 다른 과목을 대신 신청할 수 없으며, 수강 과목 철 회 후 이수 신청 학점이 최소 12학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4학년은 9학점 이상으로 함을 권장한다.

③ 철회한 과목은 성적 평가에서 제외되며, 학적부상에는 "W"(withdrawal)로 기재된다.
④ 수강 과목을 철회한 학생은 학점 초과 신청이나 성적순에 의하여 지급되는 장학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17조(중복수강 금지) ① 이수한 교과목과 교과목명 및 학점이 동일한 경우와 학점은 동일하나 과목명만 변경된 교과목은 중복 수강할 수 없으며, 이수하여도 그 성적은 무효로 한다. 다만, 재수강은 예외로 한다.
② 수업 시간이 중복되는 교과목은 수강 신청할 수 없다.

제18조(재수강) ① 취득한 성적이 D+ 이하인 교과목은 재수강할 수 있다. 다만, 매학기 3과목 6학점(F과목의 재수강은 제한없음) 이하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수강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재수강 교과목의 경우에는 반드시 수강한 과목명과 학점이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과정 변경으로 폐지된 과목은 대체인정 과목으로 허락받아 재수강할 수 있다.
③ 재수강 과목(대체 재수강 과목은 제외)의 성적은 B+ 이하로 평가하며, 재수강한 두 과목을 상호 비교하여 우수한 성적의 과목만을 졸업에 반영한다.
④ 성적증명서에서는 수강한 과목 모두를 각기 표기하되 재수강한 과목명 뒤에 (재)로 대체인정 과목으로 재수강한 과목명 뒤에 (대재)로 표기하여 구분한다.

제19조(학점의 취소) 정당한 사유 없이 학칙 및 본 규칙에 의한 기준 학점을 초과하여 수강 신청하거나 학점을 초과 취득한 경우, 초과 취득한 과목의 학점을 취소하고 해당자에게 통보한다.

제20조(폐강) ① 수강 인원이 아래의 각 호에 미달될 때에는 폐강할 수 있다.
1. 교양과목: 19명 이하
2. 전공과목: 9명 이하

② 교과목의 특성으로 제1항의 수강인원에 미달되는 과목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장 학점등록

제21조(학점 등록) ① 8학기(4학년 2학기) 등록을 필하고도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학점등록을 하는 학생에 대한 등록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2.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3.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4. 10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
② 학점등록은 해당학기 등록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제22(학사학위취득 유예 등록) ① 취업준비 및 사회적응 훈련을 위하여 졸업을 연기하는 학생 중 수강신청자는 학점등록 기준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등록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한 학생이 학사학위취득 유예기간 중 취업 프로그램 등의 참가 또는 외부시설 활용 시 경비가 요구될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경비를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6장 교육과정 편성과 이수

제23조(교육과정) ① 매 학년도 전공 및 교양교육과정은 본 대학의 교육목표에 부응하도록 편성하여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와 대학평의원회 자문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교육과정은 전공과 교양교육과정으로 구분하여 전공 교육과정은 기초교과군, 핵심교과군, 심화교과군, 응용교과군으로 구분하고, 교양 교육과정은 백석 정체성 영역, 기초교양 영역, 심화교양 영역, 소양교양 영역으로 구분한다.
③ 교직과정은 교직이수에 필요한 과목으로 구분한다.
④ 학부 또는 전공(과)은 나노디그리(Nano-Degree) 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4조(학점 이수) 학점의 이수는 별표의 전공자별 이수구분에 따라 최소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25조(학점 인정) 학업성적이 D 이상과 P를 취득하였을 때 해당 교과목의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7장 수업

제26조(전임 교수 강의 시간 배정) 전임 교수의 강의 시간은 주당 시수를 고려하여 특정한 날에 집중되지 않도록 분산하여야 한다.

제27조(수업시간표 변경) 확정된 수업시간표는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 사유 발생일 이후 1주 이내에 변경사유를 첨부하여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장 시험과 성적

제28조(시험의 종류) 시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기말 시험: 역량의 평가를 위하여 매 학기 말에 실시한다.
2. 수시 시험: 역량의 효과적 평가를 위하여 수시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추가 시험) 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학생은 결시 사유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 본인의 질병(진단서 첨부)
2. 3촌 이내의 사망(사망 진단서 또는 증빙서류 첨부)
3. 병역법상의 의무 이행(징병 검사 통지서, 교육 훈련 소집 통지서 사본 첨부)
4. 천재지변
5. 기타 교무처장이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인정한 자

② 추가 시험은 정규 시험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30조(성적 평가) ① 교과목의 성적은 수업계획서에 제시된 출석상황과 역량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② 교과목당 실제 수업 시간수의 4분의 3 이상 출석한 자에게만 성적을 부여한다.

③ 성적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A등급(A+, A)은 25% 이하로 하고, A등급(A+, A)과 B등급(B+, B)의 합은 65% 이하로 한다. 다만, 총장이 인정하는 교과목은 예외로 한다.
2. 외부기관에서 평가하는 교과목은 절대평가로 성적평가를 할 수 있다.

④ 대학 예배 성적평가에 관한 사항은 「채플과섬김 운영규정」에 따로 정한다.

제31조(성적입력) 각 교과목 담당 교수는 기말 시험 종료일로부터 교무처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성적을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제32조(성적의 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성적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이를 취소한다. 다만, 제2호의 성적은 “F"로 처리한다.

1.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교과목의 성적

2.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

제33조(입대자 성적 인정) ① 해당학기 총 수업일수의 4분의 3 이상을 이수하고 입대휴학하는 재학생이 해당 학기 성적을 인정받고자 할 때에는 성적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영일자가 기말고사 이후일 경우에는 기말고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성적인정신청서를 제출한 학생이 수강하고 있는 교과목의 담당교수는 입대휴학전의 출석, 과제, 시험성적 등을 감안하여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제34조(성적 열람 및 정정) ① 교과목 담당 교수는 교무처에서 정하는 기간에 학생들이 성적 열람 및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과목 담당 교수는 성적 열람 및 정정기간에 착오, 누락, 학생의 이의 제기 등으로 성적을 정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하여 정정할 수 있다.
③ 성적 열람 및 정정기간 종료 후 최종 확정된 성적은 교무처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교무처에 제출된 성적은 정정할 수 없다. 다만, 성적누락, 기재(입력) 착오 등 담당교수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 그 사유가 기재된 성적정정 신청원, 해당 사유에 속하는 시험지 원본, 출석부를 다음 학기 개강 1주일 전까지 교무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성적 평점 평균의 계산) ① 매 학기 성적 평점 평균의 산출은 수강 신청 과목별 평점에 과목별 학점수를 곱한 합계를 수강 신청 총학점수로 나누어 산출하고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이를 반올림한다. 다만, P(급) 또는 F(급)으로 표시하는 과목은 평점 평균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text{기 평점평균} = \frac{\Sigma(\text{수강신청과목별 평점} \times \text{과목별 학점수})}{\text{수강신청 총 학점수}}$$

② 성적 평점 평균이 같은 경우의 석차는 다음 호의 순서에 따라 순위를 정한다.
1. 해당학기 취득 학점수가 많은 자
2. 해당학기 취득 과목수가 많은 자
3. 기 취득 학점수가 많은 자
4. 전체학년 평점 평균이 높은 자
5. 연소자 우선

제9장 교과목별 담당 교강사

제36조(강의 시간 배정) 전임교원의 주당 강의 책임 시수는 12시간이다. 다만, 보직 등의 사유로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제37조(교과목 담당)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목 담당교수는 소속 학부에서 배정하고,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

제38조(강사) ① 개설되는 교과목을 전임교원이 담당할 수 없거나 주당 강의 책임시수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과목 담당을 강사로 배정할 수 있다.
② 강사의 임면 등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9조(대강) 교과목 담당 교강사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강을 하게 할 때에는 사전에 학부장이 해당 사유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장 전공 선택 및 변경

제40조(전공 선택 및 변경) ① 전공선택 및 변경은 교무처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청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전공선택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혁신융합학부의 전공은 복수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장 부전공, 융합전공, 기타전공

제41조(부전공, 융합전공, 기타 전공 등의 운영) ① 일부 학부와 전공을 제외한 모든 학부의 전공을 부전공으로 개방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의 수용 능력과 특수성을 감안하여 해당 학과와 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② 동일학부 내 또는 총장이 인정하는 학부 간 2개 이상의 전공이 연계 또는 융합하여 융합전공 등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③ 융합 · 기타 전공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 제출하여 총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1. 융합 · 기타 전공 설치제안서 1부

2. 융합 · 기타 전공 교육과정표 1부
3. 융합 · 기타 전공 운영계획서 1부
4. 관련 전공 교원 2/3 이상의 동의서 1부
5. 관련 전공 교수회의록 사본 1부

④ 부 · 융합 · 기타 전공 등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2조(이수 자격 및 시기) ① 부전공의 이수자격 및 시기는 따로 정하지 아니한다.

② 융합 · 기타 전공을 신청하는 자는 2개 학기 이상 수료자로서 총 평점 평균이 2.0 이상인 자라야 한다.

제43조(이수 학점 및 수강 지도) ① 부전공 또는 융합 · 기타 전공 등의 이수학점은 해당 전공에서 개설하는 과목 중에서 21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혁신융합학부내의 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는 경우에는 [별표] 유형별 졸업 최저이수 학점표의 복수전공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과목을 주전공과 부전공 또는 융합 · 기타 전공 등으로 중복하여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부전공 또는 융합 · 기타 전공 등을 위한 수강 지도는 해당 전공 주임교수 및 평생담임교수가 담당한다.

제44조(실험실습비) 부전공 및 융합 · 기타 전공 등의 이수자가 본 대학에서 지정한 실험실습 과목을 신청할 경우, 실험실습비 등록기간 내에 소정의 실험실습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5조(자격 취득) ① 부전공 또는 융합 · 기타 전공의 이수 사정은 부전공 또는 연계 · 융합 · 기타 전공 등의 해당 학부(과)에서 담당하며, 주전공 이수 사정과 동일한 절차를 거친다.

② 부전공 또는 융합 · 기타 전공 등을 인정할 때에는 학위증서 및 학적부에 기재한다.

③ 취득한 학점이 부전공 또는 융합 · 기타 전공 등의 학점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단수전공자에 한하여 18학점 범위 내에서 주전공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일반 선택 학점으로 인정된다.

④ 부전공 또는 융합 · 기타 전공 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전공 인정을 위한 소정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⑤ 기타 전공의 자격취득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장 복수 전공

제46조(복수 전공의 범위) 일부 학부와 전공을 제외한 학부와 전공을 복수 전공으로 개방하되 시설의 수용능력과 특수성을 감안하여 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47조(실험 실습비) 복수전공 이수자가 본 대학에서 지정한 실험 실습 과목을 선택할 경우, 실험실습비 등록기간 내에 소정의 실험 실습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8조(학점 이수) ① 복수전공 이수자는 해당 전공에서 지정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복수전공을 위해 취득한 학점이 복수전공 이수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단수전공자가 되며 18학점 이내에서 주전공의 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49조(학위 수여) 복수 전공 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전공과 제2전공의 학점을 취득하고 졸업 이수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졸업성적 평점평균이 2.0 이상이어야 하고, 다중전공자는 3.0 이상이어야 한다.

제13장 수업 관리

제50조(수업 계획서 입력 및 열람) ① 교과목 담당 교·강사는 매 학기 수강신청 전 교무처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수업계획서를 입력하여야 하며, 수강학생들에게 열람시켜야 한다.

② 수업 계획서의 주된 내용은 교과목 역량, 교과목 설명, 활용기자재, 주간계획, 역량별 세부평가계획 등으로 한다.

제51조(교수 방법) ① 백석교양대학장과 학부장은 매학기 말에 다음 학기 교과목 담당 교·강사의 강의내용 및 교수 방법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동일 과목 담당 교·강사는 수시로 수업진행 상황과 역량평가 등에 관하여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③ 학기 중 외부실기수업 등으로 교외에서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학부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④ 학기 중 방송·통신에 의한 원격수업으로 강의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⑤ 기타 집중이수제, 캡스톤디자인 등의 교수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2조(휴・결강) ① 교원은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휴・결강하지 못한다.
② 담당교수가 출장 등의 사유로 휴강할 때에는 휴강 전에 휴강원을 제출하여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휴・결강을 하게 된 경우 교과 담당교수는 사전에 수강학생들에게 보강일자와 시간 등을 공지하여 보강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53조(보강) 휴・결강된 교과목은 사전에 제출된 보강계획대로 반드시 해당 학기에 보강을 실시하고 보강 결과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4조(학부·학년 단위 행사의 보강) 학부・학년 단위 행사(M・T, 체육대회 등)로 인한 휴강 시에는 해당 학부장이 행사 계획서와 보강 계획서를 교무처장에게 제출,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5조(학생 출석점검) 각 교과목 담당교수는 매 교시 수강학생의 출결사항을 정확하게 기록・유지한다.

제14장 출석과 결석

제56조(출석 실격) 한 학기 실수업 시간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결석한 자는 해당 과목의 성적을 "F"로 처리한다.

제57조(결석 처리) 무단결석, 강의 도중 무단 퇴실 등은 결석으로 처리하며, 지각과 조퇴는 3회를 1회의 결석으로 간주한다.

제58조(출석 인정) ①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한 결석은 해당기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증빙자료는 사유발생 5일 이내에 해당학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의 결혼은 5일
2. 직계가족(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형제, 자매)의 사망은 5일
3. 본인의 질병으로 인한 입원 또는 치료는 2주
4. 징병 검사 또는 병역 의무로 인한 경우에는 소요 기간
5. 정부 기관의 요청에 의한 회의나 행사에 참가할 경우에는 해당 기간
6. 국제회의 참가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7. 기타 교무(학생)처장이 승인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

② 조기취업을 승인받은 자는 해당 취업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은 '조기취업자에 대한 학점인정 운영지침'을 따른다.
③ 해당 학부장은 사실 확인 후 이를 해당 교수에게 통보하고 출석을 인정토록 한다.

제15장 학사경고 및 제적

제59조(학사경고) 매 학기 학업 성적의 평점 평균이 1.50 미만인 자에게는 학사경고를 하고 이를 본인과 보호자 및 학부장에게 통보한다.

제60조(학사제적) 재학 중 연속하여 3회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제적 처리할 수 있다.

제16장 휴학, 복학

제61조(휴학의 종류) 휴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창업휴학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1. 일반 휴학: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해당 학기 수학이 불가능할 때의 휴학
2. 군 입대 휴학: 군 입영 명령을 받았을 때 또는 지원 입대 등 병역의무로 인한 휴학
3. 창업휴학: 본 대학이 인정하는 창업사유로 인한 휴학
4. 임신, 출산, 육아휴학: 임신, 출산, 육아 등에 의한 휴학

제62조(휴학원 제출) ① 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원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무처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1. 질병휴학: 병원급 이상의 진료기관에서 발행한 4주 이상의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진단서 1부
2. 군 휴학: 입영통지서 사본(원본대조 확인) 1부
3. 창업휴학: 신청자격 증빙자료(창업교육운영규칙 제7조), 평생담임교수 추천서 사본 각 1부
4. 임신, 출산, 육아휴학: 진단서 및 주민등록등본 1부

② 휴학 기간 경과 후라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교무처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1. 4주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을 때(병원급 이상의 진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첨부)
2.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공공 기관이 발행하는 증명서 첨부)

③ 휴학 기간 중 휴학의 종류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휴학원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 휴학하고 귀가조치를 받았을 경우 귀가조치증 사본을 첨부하여 귀가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휴학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3조(휴학 기간) ① 휴학은 학기 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통산하여 4개 학기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질병 등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2개 학기를 추가 연장할 수 있다.

② 휴학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휴학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휴학 기간 연장원을 제출하여 교무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창업휴학은 최대 2년까지 가능하다. 다만, 학기 단위로 심사하여 창업휴학 유지의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한다.

④ 임신, 출산, 육아휴학 등은 각각 1개 학기에 한하여 허락한다.

⑤ 병역의무로 인한 군입대, 창업, 임신, 출산, 육아휴학 등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4조(휴학자의 등록금) ① 휴학한 학생의 복학 시 기 납부한 등록금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학일이 학기개시일로부터 30일 경과 전: 기 납부한 등록금 전액 인정
2. 휴학일이 학기개시일 이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경과 전: 기 납부한 등록금 2/3 해당액 인정
3. 휴학일이 학기개시일 이후 6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90일 경과 전: 기 납부한 등록금 1/2 해당액 인정
4. 휴학일이 학기개시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기 납부한 등록금 전액 무효

② 군 입대, 질병, 임신, 출산, 육아 휴학생이 해당 학기 성적인정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복학 시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전액 인정한다.

③ 분납등록 휴학자의 등록금 인정은 해당학기의 완납 등록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등록 인정액을 제외한 차액은 환불 조치한다.

제65조(휴학의 제한) 신·편·재입학생에게는 첫 학기에 휴학을 승인하지 아니한다. 다만, 병역의무로 인한 군 입대, 천재지변, 4주 이상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의 발생, 임신, 출산, 육아, 기타 총장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6조(복학) ① 휴학 기간이 만료된 자는 교무처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복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휴학자 중 조기에 복학을 원하는 경우 복학희망 학기에 조기복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 입대 휴학자 중 군 제대 일자가 수업 일수 4분의 1 이내일 경우 또는 소속 부대장의 휴가 또는 수강 허가 등으로 사실상 복학 허용 마감일 이전부터 출석이 가능한 경우

에는 전역 예정증명서, 수강허가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희망하는 자에 한하여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17장 재입학, 편입학, 학사 편입학, 전공예약제

제67조(재입학) ① 본 대학에 재적하였던 자로서 제적 및 자퇴한 자는 소정의 심의 절차를 거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재입학 정원은 직전학기 모집 단위별 제적자 총수에서 편입학 정원을 제외한 인원으로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재입학생은 등록금 이외에 해당 학년도의 입학금을 가산하여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재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교무처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재입학원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8조(편입학 및 학사편입학) ① 편입학은 매 학년도 초에 실시한다.

② 편입학 정원은 1, 2학년 입학 정원 중 모집 단위별 제적자 수로 한다.

③ 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대학에서 2년 이상 수료한 자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 학점은행제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평생교육법, 기타 법령에 의한 동등 학력 이상 자로 한다.

④ 편입학 지원 절차는 신입학 지원 절차와 같다.

⑤ 학사 학위를 가진 자는 법령이 정하는 허용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3학년에 편입학할 수 있다.

⑥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관계 법령에 따라 매 학기 초 정원외로 제2학년 또는 제3학년에 편입학할 수 있다.

⑦ 4학년 편입학생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9조(편입학생의 학점 인정 및 이수 요구 학점) ① 편입학생의 학점 인정 및 이수 요구 학점은 전적 대학의 교과 및 이수내역 등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② 편입학생의 인정학점은 제100조제3항의 학년별 수료기준 학점 이하로 한다.

제70조(전공예약제 운영) ① 2년(4개 학기) 연속으로 희망 전공 신청자가 15명 이하일 경우 학부장은 소속 교수 전원의 서명을 받아 전공예약제 모집을 교무처에 제안할 수 있다.

② 교무처는 제안서를 검토한 후,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 총장의 결재를 받아 운영할 수 있다.

제18장 전부(과)

제71조(허용 인원 및 예외 사항) ① 전부(과)의 허용 인원은 전입 또는 전출 학부(과)의 해당 학년도 입학정원의 각각 10% 이하로 한다.
② 학부 또는 전공(과) 통폐합, 모집 정지, 기타 부득이한 경우의 전부(과), 허용 인원, 신청 시기 및 절차, 자격, 전형 방법 및 일정 등은 총장의 허락을 받아 따로 시행한다.

제72조(신청 시기 및 절차) ① 전부(과)는 교무처에서 정한 기간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전부(과)를 희망하는 학생은 원서와 전입학부(과) 및 전출학부(과) 학부장의 승인서,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교무처에 제출한다.

제73조(신청 자격) ① 1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에 합당한 자
1. 재학 중 2회 이하의 전부(과)를 승인받은 자
2. 직전학기까지 평점평균이 2.0 이상을 취득한 자
② 총장이 전부(과)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74조(전형방법) 전형은 전부(과) 신청서에 의한 제74조의 신청자격 서류심사 후 해당 학부에서 주관하여 성적과 자체 선발 방법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75조(전형일정) 전부(과) 전형 일정 등 세부사항은 학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시행 학년도마다 따로 정한다.

제76조(교과과정 이수) 교과목 이수는 전부(과)한 학년부터 동일학년 당초 입학자와 동일하게 이수하여야 한다.

제77조(등록) 전부(과)가 허가된 학생은 학교에서 지정한 소정의 등록절차를 필하여야 한다(타 계열 전부(과) 시 등록금 차액 환불 및 추가 납부 포함).

제19장 계절 학기

제78조(개설) ① 계절 학기는 교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여름 방학과 겨울 방학 중에 개설할 수 있다.
② 계절 학기 개설기간은 매학기 종료 후, 15일 이상으로 하며, 개설 과목, 학점, 개강 시간, 수강료 등 필요한 사항을 교무처장이 공고한다.

제79조(개설 교과목) ① 개설 교과목은 교무처장이 따로 정한다.
② 개설과목은 수강 신청인원이 8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개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0조(수강 대상자) 수강대상자의 자격은 재학생 및 군 휴학생으로 한다.

제81조(수강 학점) ① 계절 학기 수강 학점은 매회 6학점 이내로 한다. 다만, 사회봉사활동 교과목을 수강신청하는 경우에는 7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② 매 학점당 수강 시간은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제82조(학점 인정) ① 계절학기로 이수한 학점은 해당 학기 이수학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실 수업시간의 4분의 3 이상을 출석하고 소정의 시험에서 D 이상의 성적을 취득하였을 경우는 학점을 인정한다.
③ 계절학기의 취득 성적은 졸업이수학점으로만 인정하며, 조기졸업, 전부(과), 학사경고, 학사제적, 장학생 선발 등의 사정기준에 적용하지 않는다.

제83조(시험) 계절 학기의 시험은 정규학기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제84조(성적 평가 및 처리) 계절학기의 성적 평가 방법은 정규 학기의 평가 방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85조(수강신청 및 등록) ① 계절학기 개설 과목을 수강하려는 학생은 교무처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계절학기 개설 과목의 수강을 허가받은 자는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수강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과목에 대하여는 수강을 취소한다.

제86조(수강료) 1학점당 수강료는 해당 학기 등록금/19학점으로 산출된 총액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이를 감면할 수 있다.

제20장 공개강좌

제87조(공개강좌) 본 대학에 평생 교육의 일환으로 일반교양, 학술 또는 실무에 관한 이론과 기술을 보급하기 위하여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제88조(공개강좌의 과목) 공개강좌의 과목, 제목, 기간, 수강 자격 및 장소 기타에 관한 사항은 강좌 개설 시 공고한다.

제89조(허가) 공개강좌를 수강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개강 중 또는 방학 중 수시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90조(비용의 징수) 공개강좌의 수강생에 대하여는 강의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21장 조기 졸업

제91조(정의) 조기졸업이란 재학기간 중 우수한 성적을 얻은 자에게 7학기를 이수하고 졸업학점을 취득한 경우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제도이다.

제92조(신청 횟수) 조기졸업신청은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가능하다.

제93조(신청 시기 및 절차)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자는 7학기 개강 이전에 학부장과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4조(신청자격) 조기졸업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6학기말까지 매 학기 성적 평점 평균이 4.2 이상인 자
2. 학칙에 의하여 징계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3. 직전학기에 15학점 이상 수강신청하고 미취득 과목이 없는 자

제95조(자격상실)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기졸업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조기졸업 신청자로 이수도중 휴학하는 자
2. 학칙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
3. 7학기 성적평균이 4.19 이하인 자
4. 계절학기로 학점을 이수하여 졸업이수 요구학점을 충족한 자

제96조(조기졸업자의 학점취득) 조기졸업대상자는 4학년 이수과목을 선이수함으로 졸업요구학점을 충족시킬 수 있다.

제97조(조기졸업자의 확정) 조기졸업자는 졸업사정회의에서 확정하되 다음 조건을 갖춘 자로 한다.

1. 해당 학부(과) 교육과정상의 교양, 전공 등 졸업이수 요구학점을 충족한 자
2. 해당 학부(과)의 졸업평가에 합격한 자
3. TOEIC 750점 이상의 실력을 갖춘 자. 다만, 영어학 전공자는 TOEIC 800점 이상으로 한다.
4. 위의 제3호와 동등한 실력을 갖추었다고 졸업사정위원회에서 판단한 자

제98조(조기졸업 탈락자에 대한 조치) 조기졸업을 희망한 자가 탈락할 경우에는 8학기 등록금을 납부하고 최저 9학점 이상 수강 신청하여야 한다.

제22장 졸업, 수료, 졸업 평가

제99조(졸업 및 수료의 기준) ① 졸업에 필요한 최저 이수 학점은 별표와 같다.

② 외국인 학생은 졸업 전까지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을 반드시 취득하여야 한다.

③ 수료에 필요한 최저 이수 학점은 1학년은 30학점, 2학년은 60학점, 3학년은 90학점, 4학년은 120학점 이상으로 한다.

④ 학년의 진급기준은 매학년 2개 학기 이상 이수자로 한다.

제100조(졸업연기) ① 수료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교원 자격증 및 각종 자격증 관련 과목 등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학기 이전에 졸업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1조(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① 졸업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취업준비와 사회적응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한 학기 이상 졸업을 연기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학기 이전에 학부장과 주임교수를 경유하여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원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사학위취득 유예 기간은 재학연한 이내로 하되, 학기 단위로 2회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③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은 매 학기말에 실시하되, 해당학기 성적이 확정된 후 승인 여부를 확정하며, 학사학위취득 유예가 확정된 자는 휴학을 할 수 없다.

④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중 수강신청을 하고 학점등록을 한 자는 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며, 취득한 학점은 성적에 반영한다.

⑤ 학사학위취득 유예 기간 중 사망, 부상, 질병, 군 입대, 해외연수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지속이 어려울 경우에는 증빙서를 첨부, 학부장이 교무처에 요청하면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 졸업시기의 수료자로 처리 후 다음 학기에 졸업자로 처리한다.

제102조(졸업 평가) ① 본 대학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는 졸업평가(졸업논문, 졸업시험, 졸업연주회, 졸업작품전 등 학부에서 지정하는 평가)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졸업평가는 전기졸업예정자는 11월말, 후기졸업예정자는 5월말까지 실시한다. 다만, 학부(과)의 사정에 의하여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학부장은 졸업평가 실시 결과를 졸업사정 1개월 전까지 교무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졸업평가에 합격한 자는 재평가하지 않는다.

제23장 학력 조회

제103조(학력 조회) ① 편입학생에 대한 학력 조회는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② 학력 조회 결과 학력에 허위 사실이 있음이 판명된 경우에는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제적 처리한다.

제104조(학력 조회 회보) 외부로부터의 학력 조회에 대하여는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회보한다.

제24장 제증명 발급

제105조(증명서의 종류) 증명서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학증명서: 현재 재학하고 있는 자
2. 재적증명서: 본 대학에 재적한 사실이 있는 자
3. 졸업증명서: 졸업한 자
4. 졸업예정증명서: 4학년 2학기 등록을 필하고 8학기 수강신청 학점을 포함하여 졸업이수 요구학점을 충족한 자
5. 성적증명서: 전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성적
6. 휴학증명서: 재적생으로 현재 휴학 중인 자

7. 학적증명서: 학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
8. 수료증명서: 해당 학년까지 소정의 등록과 학점을 취득한 자
9.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 증명서: 교직 이수자로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
10. 수료예정증명서: 해당 학년까지 수료에 필요한 학점 취득 예정자

제106조(증명서 교부) ① 증명서는 취업진로지원처에서 발급한다.
② 도서 미납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명서 발급을 보류할 수 있다.

제25장 학적부 기재 사항 변경

제107조(변경 절차) 학적부에 기재된 인적 사항의 변경을 원하는 자(졸업생 포함)는 소정의 정정원에 변경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 기재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교무규칙]은 폐지한다. 다만, 종전의 교무규칙에 의하여 기 시행된 내용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별표]

유형별 졸업 최저이수 학점표

□ 교양

■ 2018학번 이후

구분	백석정체성		기초교양							심화교양		소양교양					소계
	정체성		사고와 문제해결		의사소통			정보기술	수학 및 기초과학	균형교양	창의융복교양	자기개발		인성개발			
	채플과 섬김	사랑의 실천	논리·비판적 사고	창의·융합적 사고	분야별 맞춤형 글쓰기	발표와 토론	글로벌 역량	기타 외국어				백석멘토링	협업(실용) 및 기타소양	대인관계	사회봉사	리더십	
전체	4학점	4학점 이상	2학점 이상	2학점 이상	2학점 이상	2학점	6학점	자유선택	2학점 이상	2학점 이상	14학점 이상	자유선택	P/F 1학점	2학점	4학점 이상			45학점 이상

※ 주1) '수학및기초과학'은 자연계열 학부만 이수하고 '발표와토론'은 자연계열 이외의 학부만 이수함.
주2) 2020입학자부터 백석멘토링은 매학년마다 이수하여야 함.

■ 2017학번 이전

구 분	교양 필수						교양선택	교양 소계
	백석정체성		기초학습			BU소양	균형교양	
			의사소통		정보기술	백석멘토링		
	대학예배	기독교인성	세계화	국어	정보화		7개 영역	
전체	8학점	8학점 이상	6학점 이상	2학점 이상	2학점 이상	1학점	10학점 이상	40학점 이상

※ 주) 백석멘토링은 2007입학자부터 1학년 1학기에 '대학생활과 진로'(0학점)를 2011졸업자부터 4학년 2학기에 「'취업과 진로'(0학점)이 2017-2부터 '취·창업과 진로'(1학점)로 변경」 이수함.

□ 전공

■ 단수전공

구 분	기초교과군	핵심·심화·응용교과군	소 계	졸업이수학점 (교양+전공)
일반학부	6학점 이상	48학점 이상	54학점 이상	120학점 이상
사범학부	9학점 이상	45학점 이상		
문화예술학부	15학점 이상	39학점 이상		

※ 주1) 핵심, 심화, 응용교과군을 각각 6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함.
주2) 문화예술학부 연기예술전공 2016학점 이전 입학자는 기초교과군 6학점 이상, 핵심·심화·응용교과군 48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주3) 2019학년도부터 타 학부(전공)에서 (자유선택)이수한 전공학점도 18학점 범위에서 주전공 학점으로 인정 함.

■ 복수/다중전공

구 분	주전공			복수/다중전공				졸업이수학점 (교양+전공)	
	기초교과군	핵심·심화 응용교과군	소 계	구 분	기초교과군	핵심·심화 응용교과군	소 계	복수	다중
일반학부	6학점 이상	30학점 이상	36학점 이상	동일학부	–	30학점 이상	30학점 이상	130학점 이상	150학점 이상
				일반학부	6학점 이상	30학점 이상	36학점 이상		
				사범학부	9학점 이상	27학점 이상			
사범학부	9학점 이상	27학점 이상		일반학부	6학점 이상	30학점 이상			
				사범학부	9학점 이상	27학점 이상			
문화예술학부	15학점 이상	21학점 이상		일반학부	6학점 이상	30학점 이상			

※ 주1) 전공별로 핵심, 심화, 응용교과군을 각각 3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함.
주2) 사범학부, 보건학부, 스포츠과학부, 문화예술학부로는 복수/다중전공을 신청 할 수 없음.
「단, 사범학부는 교직 복수전공 이수 승인자에 한하여 복수전공 가능」
주3) 부전공은 기초교과군과 핵심·심화·응용교과군을 합산하여 총 21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함.
주4) 사범학부 유아교육과와 유아특수교육과의 복수전공 이수 시 기초교과군 6학점/핵심·심화·응용교과군 3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 혁신융합학부의 「AR-VR, 컬처테크, 글로벌MICE, 소셜비즈니스, 빅데이터」 융합전공은 복수전공으로만 이수가능 함
☞ 디자인영상학부의 「문화상품디자인전공, 모션그래픽스전공」과 문화예술학부의 「예배사역전공」은 부전공으로만 이수가능 함
☞ 재입학자는 재입학한 학년의 교육과정을 적용한다.
학부·전공의 모집정지 및 명칭변경으로 인해 재학생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입학년도 기준의 교육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

채플과섬김 운영규정

(2020.3.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채플과섬김"을 운영·평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채플과섬김 수강) 본 백석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의 재학생은 재학 기간 중, "채플과섬김"을 필수로 수강하여야 한다.

제3조(수강 신청) "채플과섬김"은 입학 학기부터 졸업 학기동안 매학기 1과목씩 수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추가 신청할 수 있다.

제4조(이수학점) "채플과섬김"의 이수학점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시수) "채플과섬김"의 주당 시수는 1시간으로 하되, 기독교학부는 학부 특성상 2시간으로 한다.

제6조(성적 평가) ① 기독교학부의 성적은 "채플과섬김" 출석 횟수와 "성경고사" 점수를 합산하여 Pass/Fail로 평가한다.

1. 출석은 주당 2회로 하고, 8회 이상 결석한 때에는 Fail로 처리한다.
2. 성경고사는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 합격(Pass)으로 처리한다.
3. 성경고사는 매학기 시행하며, 시행 시기 및 횟수는 별도로 정한다.

② 기독교학부를 제외한 다른 학부의 성적은 "채플과섬김" 출석 횟수에 따라 Pass/Fail로 평가하되, 4회 이상 결석한 때에는 Fail로 처리한다.

제7조(재수강) "채플과섬김" 과락자에 한하여 재수강할 수 있다.

제8조(계절학기) 계절학기는 교무처와 협의하여 개설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9조(출석 인정) 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받고자 하면, 사유 발생 후 1주일 이내에 사유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교목실에 제출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② 사유에 따른 출석 인정 일수와 증빙서류는 아래와 같다.

사유	출석 인정일수	증빙서류
직계존비속의 사망	5일	① 사망진단서 또는 부고장 ② 가족관계증빙서류(호적・주민등록등본 등)
본인의 결혼	5일	청첩장 또는 결혼예식 순서지
본인의 질병으로 인한 입원	2주	입원확인서
징병 검사 또는 병역 의무 기간	해당 기간	징병검사통지서 또는 병역의무확인서
정부 기관의 요청 행사 참가	해당 기간	관련 공문
총장이 인정하는 교내 행사 또는 공무 수행	해당 기간	관련 공문
교목실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기간	관련 공문

제10조(지각・조퇴・예배 태도 불량) ① 지각은 수업시작 시간으로부터 5분 경과 후 20분까지 입실한 경우에 지각으로 처리한다. 다만, 20분이 경과된 이후부터는 입실은 가능하나 결석으로 처리한다.

② 조퇴는 수업 종료 이전에 퇴실한 경우를 말한다.

③ 예배 태도 불량은 수업 태도가 현저히 좋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④ 지각・조퇴・예배 태도 불량 등을 합산하여 2번 지적될 경우에는 결석 1회로 처리한다.

제11조(부정행위) "채플과섬김"의 대리 출석, 성경고사 부정행위, 지정좌석제 위반, 기타 이와 유사한 부정행위 등이 발견될 시, 그 경중에 따라 감점 또는 과락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세부 운영 지침) 이 규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채플과섬김"의 세부사항을 위하여 별도의 세칙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채플과섬김 운영 규칙]은 폐지한다. 다만, 종전의 채플과섬김 운영 규칙에 의하여 기 시행된 내용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채플과섬김 이수학점

구분	학기당 학점	총 이수학점	적용
채플과섬김	0.5	4학점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대학예배	1	8학점	① 2017학년도 신입생까지 ② 2019학년도 3학년 편입생까지

※ 편입생의 총 이수학점은 본 대학에서 이수해야 하는 학기에 적용한다.

교직과정 운영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원자격검정령 및 동 시행규칙에 의하여 교직과정이 설치된 전공(과)와 사범학부의 교직과정 운영과 교직과목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직과정”이란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과정을 말한다.
2. “기본이수과목”이란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의 기본과목으로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전공과목을 말한다.
3. “표시과목”이란 교원자격증에 명시하는 담당과목을 말한다.

제3조(교직과정 설치 전공(과) 및 승인인원) 교직과정이 설치된 전공(과) 및 승인인원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자격증의 수여) ① 교직과정을 이수(사범학부 포함)하고 무시험검정에 합격한 자에게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원자격증을 수여한다.

② 교직과정이수예정자(사범학부 포함)가 교직과정이 설치된 전공(사범학부 포함)을 복수로 전공하고 무시험검정에 합격하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원자격증을 수여한다.

제5조(자격증의 재교부 및 정정) 자격증을 분실하였거나 자격증이 훼손되어 못쓰게 된 때, 성명 기타 자격증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자격증의 재교부 또는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수수료) 자격증의 신규 교부 및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제2장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 선발 및 이수 확정

제8조(교직과정 이수자격 및 신청) ① 교직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자는 교직과정이 설치된 전공(과)의 학생에 한한다.

②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2학년 1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교직과정 이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수교육과로 입학한 재학생은 1학년 2학기 말 소정의 기간 내에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또는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종교, 디자인에서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2학년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변경이 가능하다. 또한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또는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종교, 디자인을 복수로 취득할 경우에는 2학년 중 소정의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다만, 이 경우 복수전공 이수인원의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제9조(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 ①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1학년 2학기까지의 성적과 면접, 적인성검사를 통하여 선발한다. 다만, 교직이수 신청자가 선발정원에 미달된 경우에는 추가로 이수신청을 받아 선발할 수 있다.

② 교직과정 이수신청자의 교직적성을 판단하기 위한 면접은 교직과정이 설치된 전공(과)별로 실시하며 면접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고 동일 전공(과)은 동일한 면접위원이 실시한다.

③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은 성적 50%, 면접점수 40%, 적인성검사 10%를 합한 총점 순으로 선발하며, 총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취득학점수, 취득과목수 순으로 선발한다.

제10조(편입생의 교직과정 이수) ① 편입생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된 경우에 한하여 교직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1. 전적 대학에서 교직과정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
2. 전적 대학과 동일한 표시과목을 부여하는 전공(과)에 편입학을 한 자. 다만, 동 규칙 제3조로 정한 승인인원에 결원이 있어야 한다.

② 위 조건이 충족된 편입생이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3학년 1학기 초 사범학부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교직과정 이수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교직과정이 설치된 전공(과)에 편입학한 자는 승인인원 외로 선발할 수 있다.

제11조(이수학점) ①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사범학부 포함)가 취득해야 할 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2010학년도 이전 편입자 포함)
   가. 전공과목 : 42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5과목 14학점 포함)
   나. 교직과목 : 별표 2로 정한 10과목 20학점. 다만, 전문상담교사(2급)는 "교직이론영역" 7과목(14학점)과 "교육실습영역" 1과목(2학점)만 이수하고,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해당 표시과목의 "교과교육영역" 2과목(4학점)만 이수함
   다.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사범학부 제외)는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의 평균성적이 각각 80/100점 이상
2. 2009학년도~2012학년도 입학자까지(2011학년도~2014학년도 편입자 포함)
   가. 전공과목 : 5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교과교육영역 3과목 8학점 이상 포함). 다만, 특수학교의 경우 전공과목은 80학점 이상으로 특수교육(공통) 42학점과 표시과목(또는 학교급별) 관련 전공 38학점 이상(교과교육영역 3과목 8학점 이상 포함) 포함하여야 하고 15학점 이내에 중복학점 인정 가능함(단, 특수(중등)에서 체육 이외의 과목은 중복학점 인정 불가)
   나. 교직과목 : 22학점 이상(교직이론 7과목 14학점, 교직소양 2과목 4학점, 교육실습 4학점)
   다.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3.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2015학년도 이후 편입자 포함)
   가. 전공과목 : 5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교과교육영역 3과목 8학점 이상 포함). 다만, 특수학교의 경우 전공과목은 80학점 이상으로 특수교육(공통) 42학점과 표시과목(또는 학교급별) 관련 전공 38학점 이상(교과교육영역 3과목 8학점 이상 포함)을 포함하여야 하고 15학점 이내에 중복학점 인정 가능함(단, 특수(중등)에서 체육 이외의 과목은 중복학점 인정 불가)
   나. 교직과목 : 22학점 이상(교직이론 6과목 12학점, 교직소양 3과목 6학점, 교육실습 4학점)
   다.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교직과목 평균성적 80/100점 이상

② 특수교육과 주·복수전공자가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또는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종교, 디자인을 복수로 취득하고자 할 경우 이수해야 할 학점 및 성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2010학년도 이전 편입자 포함)
   가. 특수교육(공통)관련 전공과목 : 42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5과목 14학점 포함)

나. 초등 관련 전공과목 : 3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5과목 14학점 포함)
다. 중등(표시과목)관련 전공과목 : 3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5과목 14학점 포함)
라. 교직과목 : 별표 2로 정한 10과목 20학점 및 교과교육영역(중등 표시과목) 2과목 4학점 추가
마.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사범학부 제외)는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의 평균성적이 각각 80/100점 이상

2. 2009학년도~2012학년도 입학자까지(2011학년도~2014학년도 편입자 포함)
가. 특수교육(공통)관련 전공과목 : 42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포함)
나. 초등 관련 전공과목 : 38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및 교과교육영역 3과목 8학점 포함)
다. 중등(표시과목)관련 전공과목 : 38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및 교과교육영역 3과목 8학점 포함)
라. 교직과목 : 22학점 이상(교직이론 7과목 14학점, 교직소양 2과목 4학점, 교육실습 4학점)
마.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3.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2015학년도 이후 편입자 포함)
가. 특수교육(공통)관련 전공과목 : 42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포함)
나. 초등 관련 전공과목 : 38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및 교과교육영역 3과목 8학점 포함)
다. 중등(표시과목)관련 전공과목 : 38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및 교과교육영역 3과목 8학점 포함)
라. 교직과목 : 22학점 이상(교직이론 6과목 12학점, 교직소양 3과목 6학점, 교육실습 4학점)
마.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교직과목 평균성적 80/100점 이상

③ 편입생의 경우 전적대학에서 취득한 교직과목과 전공과목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

제12조(기본이수과목)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교사자격종별 및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해당 과목은 매 학년도 교육과정에 명시한다.

1. 1999학년도 사범학부 입학자 및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 : 9학점 이상
2.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2010학년도 이전 편입자 포함) : 5과목 14학점 이상
3.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2011학년도 이후 편입자 포함) : 7과목 21학점 이상

제3장 교직 복수전공 이수예정자 선발 및 이수

제13조(이수자격 및 이수가능 전공) ① 본 규칙이 정하는 교직 복수전공 이수 자격은 교직과정이수예정자(사범학부 포함)로 한다.

② 교직 복수전공 이수가 가능한 전공(과)은 사범학부 전 학과 및 교직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전공(과)으로 한다.

제14조(신청 및 선발) ① 교원자격증 복수전공 이수신청서는 2학년 1학기 말(편입생의 경우에는 3학년 1학기 말) 교무처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005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신청시기는 3학년 1학기 말 교무처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이수예정자의 선발에 있어서 신청인원이 선발정원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별도의 과정을 거쳐 선발할 수 있다.

제15조(이수학점 및 성적) 교직 복수전공 이수예정자가 취득해야 할 학점 및 성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2010학년도 이전 편입자 포함)
   가. 전공과목 : 42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5과목 14학점 포함)
   나. 교직과목 : 별표 2의 교직과목 중 “교과교육영역” 2과목(4학점). 다만, 전문상담교사(2급)는 해당 없음
   다.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사범학부 제외)는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의 평균성적이 각각 80점 이상이며, 사범학부 학생이 교직과정 설치전공(과)을 복수전공 할 경우에는 2005학년도 제2학기부터 이수한 과목에 한하여 복수전공(과)의 교직과목과 전공과목의 평균성적이 각각 80점 이상이어야 함
2. 2009학년도~2012학년도 입학자까지(2011학년도~2014학년도 편입자 포함)
   가. 전공과목 : 5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이상, 교과교육영역 3과목 8학점 이상 포함). 다만, 특수학교의 경우 전공과목은 80학점 이상으로 특수교육(공통) 42학점과 표시과목(또는 학교급별) 관련 전공 38학점 이상(교과교육영역 3과목 8학점 이상 포함) 포함하여야 하고 표시과목(또는 학교급별)이 동일한 경우 상호 인정할 수 있으며, 15학점 이내에 중복학점 인정 가능함(단, 특수(중등)에서 체육 이외의 과목은 중복학점 인정불가)
   나.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3.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2015학년도 이후 편입자 포함)
   가. 전공과목 : 5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교과교육영역 3과목 80학점 이상으로 특수교육(공통) 42학점과 표시과목(또는 학교급별)관련 전공 38학점 이상(교과교육영역 3과목 8학점 이상 포함)포함하여야 하고 표시과목

(또는 학교급별)이 동일한 경우 상호 인정할 수 있으며, 15학점 이내에 중복학점 인정 가능함(단, 특수(중등)에서 체육 이외의 과목은 중복학점 인정불가)

나.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및 교직과목 평균성적 80/100점 이상

다. 〈삭제〉

제16조(이수인원의 제한) ① 2005학년도 이전 입학자(편입자 포함)의 복수(부)전공 이수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범학부 : 입학정원의 100% 이내
2. 교직과정 설치전공(과) : 승인인원 이내

② 2006학년도 이후 입학자(편입자 포함)의 복수(부)전공 이수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범학부: 입학정원의 100% 이내
2. 교직과정 설치전공(과) : [별표 1]의 교직과정 설치 승인전공(과) 및 승인인원의 2배수 이내

제4장 교육실습

제17조(교육실습) 교직과정이수예정자(사범학부 포함)는 졸업학년도 이내에 교육실습 과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수하여야 한다.

1.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2010학년도 이전 편입자 포함) : 교육실습 1과목 2학점(4주 이상)
2.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2011학년도 이후 편입자 포함) : 학교현장실습 2학점 이상(4주 이상) 및 교육봉사활동 2학점 이상(60시간 이상)

제18조(복수전공자의 교육실습) 교직 복수전공 이수예정자의 교육실습은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주전공 과목으로 한번만 실시한다. 다만, 교과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복수전공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실습경비) 교육실습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혜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교육봉사활동) ① 2009학년도 이후에 입학(2011학년도 이후 편입 포함)한 교직과정이수예정자(사범학부 포함)는 교육봉사활동(2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봉사활동 이수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범학부 : 1학년 1학기부터 4학년 1학기까지
2. 교직과정 설치전공 : 2학년 1학기부터 4학기 1학기까지

② 총 60시간의 봉사활동 후 교육봉사활동 이수확인서(별지 제2호서식)를 소정의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봉사활동과 사회봉사활동의 봉사실적은 상호 중복인정 받을 수 없으며, 1일 최대 8시간을 초과하여 인정받을 수 없다.

제5장 교원양성위원회

제21조(목적) 교직과정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를 둔다.

제2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자에 대한 검정 실시
2. 대학이 정하는 별도의 무시험검정 기준 마련 : 인성검사, 적성검사, 면접 등
3. 교직과정 이수예정자/교직 복수전공·부전공 이수예정자의 선발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4. 교원양성과정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교원양성에 관한 사항

제23조(구성) ① 위원회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사범학부장·교직과정 설치전공 학부장, 교무처 학사업무 팀장을 포함한 교직관련 교원 및 외부인사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2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회의소집)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27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 2명 이상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운영세칙) 이 규칙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장 무시험검정

제30조(무시험검정 대상) 사범학부 또는 교직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 한다.

제31조(무시험검정 신청) 무시험검정 대상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원서를 소정의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① 교원자격무시험검정은 서류심사로 한다.
② 무시험검정의 합격기준은 학위를 취득한자(복수전공 포함)로서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 기준에 의한 과목과 학점을 취득하여야 하며, 그 세부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주전공의 무시험자격검정에서 불합격된 자는 복수전공의 무시험자격검정도 불합격 처리된다.

제33조(제출서류) 무시험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2. 전적 대학의 성적증명서(편입생에 한함)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교직과정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사범학부및교직과정이수자의복수전공시행세칙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8조 제2항 및 제14조의 교직이수예정자 신청 및 선발시기는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11조제3항은 편입학한 재학생에게도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2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4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5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7.9.1.)

교직과정 설치승인 전공(과) 및 승인인원

1. 일반학부

대상학부		자격종별	적용연도	입학정원	승인인원	비 고
학 부	전 공					
기독교학부	신학	중등학교 정교사(2급) 종교	1996학번부터	60	20	
			2006학번부터	40	12	
			2008학번부터	40	4	
			2012학번부터	40	3	
			2016학번부터	40	2	
	선교학		1996학번부터	60	20	
			2006학번부터	20	6	
			2008학번부터	20	2	
	미디어선교학		2018학번부터	20	2	
	기독교교육학		1996학번부터	60	20	
			2006학번부터	50	15	
			2008학번부터	50	5	
	기독교상담학	전문상담교사 (2급)	2004학번부터	80	24	
			2005학번부터	100	30	
			2006학번부터	80	24	
			2008학번부터	80	8	
어문학부	일본어학	중등학교 정교사(2급) 일본어	2005학번부터	80	8	
			2006학번부터	120	12	
			2012학번부터	120	11	
			2015학번부터	100	10	
			2016학번부터	80	8	
			2018학번부터	50	5	
	중국어학	중등학교 정교사(2급) 중국어	1999학번부터	60	6	
			2002학번부터	100	10	
			2003학번부터	140	14	
			2012학번부터	140	13	
			2015학번부터	130	13	
			2018학번부터	80	8	
사회복지학부	아동복지학	유치원 정교사(2급)	1998학번부터	60	18	
			2008학번부터	60	6	
	청소년학	전문상담교사 (2급)	2004학번부터	60	18	
			2005학번부터	80	24	
			2008학번부터	80	8	

관광학부	관광경영학	중등학교 정교사(2급) 관광	2006학번부터	80	8	
			2012학번부터	80	4	
			2018학번부터	–	–	
	호텔경영학		2006학번부터	130	13	
			2012학번부터	130	5	
			2018학번부터	–	–	
	관광통역		2006학번부터	30	3	
			2012학번부터	30	2	
			2015학번부터	–	–	
디자인 영상학부	시각정보디자인	중등학교 정교사(2급) 디자인·공예	2008학번부터	73	7	
			2012학번부터	70	7	
	산업디자인		2008학번부터	73	7	
			2012학번부터	70	5	
	영상애니메이션		2008학번부터	73	7	
			2012학번부터	70	5	
	인테리어디자인	중등학교 정교사(2급) 디자인·공예	2009학번부터	70	7	
			2012학번부터	70	5	
	공예디자인		2009학번부터	30	3	
			2012학번부터	30	2	
			2015학번부터	–	–	
디자인 영상학부	시각정보디자인	중등학교 정교사(2급) 디자인	2017학번부터	70	7	
	산업디자인		2017학번부터	70	5	
			2018학번부터	40	4	
	영상애니메이션		2017학번부터	70	5	
			2018학번부터	30	3	
	인테리어디자인		2017학번부터	70	5	
			2018학번부터	40	4	

2. 사범학부

대상학부		자격종별	승인인원	적용연도	비 고
학 부	과				
사범학부	유아교육과	유치원 정교사(2급)	입학생 전원	1999학번부터	
	특수교육과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1999학번부터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종교, 관광, 디자인・공예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종교, 디자인		2017학번부터	
	유아특수교육과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2001학번부터	
	특수체육교육과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체육		2004학번부터	

[별표 2]

교직과목 일람표

1.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2010학년도 이전 편입자 포함)

영 역	과 목	학 점	비 고
교직이론	교육학개론	2	총 8과목 중 7과목/14학점 이상 이수
	교육심리	2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2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2	
	교육사회	2	
	교육철학 및 교육사	2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2	
	교사론	2	
교과교육	교과교육론	2	2과목/4학점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2	
교육실습	교육실습	2	4주
합 계	11과목/22학점		

※ 전문상담교사(2급)는 교과교육영역(2과목)을 제외하고 8과목(16학점) 이상을 이수함.

2. 2009학년도~2012학년도 입학자까지(2011학년도~2014학년도 편입자 포함)

영 역	과 목	학 점	비 고
교직이론	교육학개론	2	총 9과목 중 7과목/14학점 이상 이수
	교육심리	2	
	교육과정	2	
	교육평가	2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2	
	교육사회	2	
	교육철학 및 교육사	2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2	
	교사론	2	
교직소양	특수교육학개론	2	2과목/4학점
	교직실무	2	
교육실습	학교현장실습	2	4주
	교육봉사활동	2	60시간
합 계	12과목/24학점		

※ '특수교육학개론' 대체 인정.
- 특수교육과, 유아특수교육과, 특수체육교육과 : 전공과목인 '특수교육학' 또는 '특수교육개론'을 이수하여 '특수교육학개론'로 대체 인정
- 유아교육과, 아동복지학전공 : 전공과목인 '특수아동지도'를 이수하여 '특수교육학개론'으로 대체 인정
- 위 사항은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시 적용하며 대체 인정된 전공과목은 전공이수학점에 포함할 수 없음
-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교과목 이수자는 '교육과정' 또는 '교육평가' 교과목을 중복하여 이수할 수 없음

3.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2015학년도 이후 편입자 포함)

영 역	과 목	학 점	비 고
교직이론	교육학개론	2	총 9과목 중 6과목/12학점 이상 이수
	교육심리	2	
	교육과정	2	
	교육평가	2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2	
	교육사회	2	
	교육철학 및 교육사	2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2	
	교사론	2	3과목/6학점
교직소양	특수교육학개론	2	
	교직실무	2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	2	
교육실습	학교현장실습	2	4주
	교육봉사활동	2	60시간
합 계	13과목/26학점		

※ '특수교육학개론' 대체 인정.
- 특수교육과, 유아특수교육과, 특수체육교육과 : 전공과목인 '특수교육학' 또는 '특수교육개론'을 이수하여 '특수교육학개론'로 대체 인정.
- 유아교육과, 아동복지학전공 : 전공과목인 '특수아동지도'를 이수하여 '특수교육학개론'로 대체 인정.
- 위 사항은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시 적용하며 대체 인정된 전공과목은 전공이수학점에 포함할 수 없음.

[별지 제1호 서식]

교직과정 이수 신청서

1. 인적사항

소 속	_____ 학부		_____ 전공
성 명		학 번	
주민등록번호	–	연 락 처	자 택 : 휴대폰 :

2. 자격종별 및 표시과목 : _____

상기 본인은 교직과정운영규칙에 의하여 교원자격검정을 위한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신청합니다.

〈유의사항〉

1. 본 대학교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여 **졸업이 가능**하여야 함.
2. 교원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에 대한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며 평균성적 기준은 아래와 같다.
   - ○ **2008학번 이전 : 전공 및 교직과목 각각 80점 이상**
   - ○ **2009~2012학번 : 전체 수강과목 평균성적이 75점 이상**
   - ○ **2013학번 이후 : 전공과목은 75점 이상, 교직과목은 80점 이상**
3. **선발된 전공을 중도에 변경할 경우에는 이수자격이 상실됨.**

20 년 월 일

신 청 자 _____ (서명 또는 날인)

주임교수 _____(서명 또는 날인)

학 부 장 _____(서명 또는 날인)

백석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교육봉사활동 이수확인서

<table>
<tr><td rowspan="3">신 청 인
인적사항</td><td>소 속</td><td colspan="5">백석대학교 학부 전공</td></tr>
<tr><td>학 번</td><td></td><td>학년</td><td></td><td>성명</td><td></td></tr>
<tr><td>연 락 처</td><td colspan="5">집 : 휴대폰 :</td></tr>
<tr><td rowspan="19">봉사활동
내 용</td><td>기 관 명</td><td colspan="3"></td><td>대표자명</td><td></td></tr>
<tr><td>주소(연락처)</td><td colspan="5">☎ ( ) -</td></tr>
<tr><td>봉사활동 내용</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16">활 동 시 간

*1일 최대인정
시간(8시간)</td><td>횟수</td><td colspan="3">활 동 기 간</td><td>시 간</td></tr>
<tr><td>1</td><td colspan="3">년 월 일 (: ~ :)</td><td>( )시간</td></tr>
<tr><td>2</td><td colspan="3">년 월 일 (: ~ :)</td><td>( )시간</td></tr>
<tr><td>3</td><td colspan="3">년 월 일 (: ~ :)</td><td>( )시간</td></tr>
<tr><td>4</td><td colspan="3">년 월 일 (: ~ :)</td><td>( )시간</td></tr>
<tr><td>5</td><td colspan="3">년 월 일 (: ~ :)</td><td>( )시간</td></tr>
<tr><td>6</td><td colspan="3">년 월 일 (: ~ :)</td><td>( )시간</td></tr>
<tr><td>7</td><td colspan="3">년 월 일 (: ~ :)</td><td>( )시간</td></tr>
<tr><td>8</td><td colspan="3">년 월 일 (: ~ :)</td><td>( )시간</td></tr>
<tr><td>9</td><td colspan="3">년 월 일 (: ~ :)</td><td>( )시간</td></tr>
<tr><td>10</td><td colspan="3">년 월 일 (: ~ :)</td><td>( )시간</td></tr>
<tr><td>11</td><td colspan="3">년 월 일 (: ~ :)</td><td>( )시간</td></tr>
<tr><td>12</td><td colspan="3">년 월 일 (: ~ :)</td><td>( )시간</td></tr>
<tr><td>13</td><td colspan="3">년 월 일 (: ~ :)</td><td>( )시간</td></tr>
<tr><td>14</td><td colspan="3">년 월 일 (: ~ :)</td><td>( )시간</td></tr>
<tr><td>15</td><td colspan="3">년 월 일 (: ~ :)</td><td>( )시간</td></tr>
<tr><td colspan="3">총 ( )시간</td><td colspan="2">담당자 : (인)</td></tr>
</table>

협조사항 : 1. 본 봉사확인서는 학생의 봉사학점인정의 자료로 사용됨으로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총 봉사시간 및 담당자 날인 부분은 투명테이프를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와 같이 교육봉사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장 : (직인)

백석대학교 사범학부장 귀하

[별표 3]

교원자격종별 무시험검정 합격 기준표

1. 주전공자 및 단수전공자 기준

자격종별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2010학년도 이전 편입자 포함)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2011학년도 이후 편입자 포함)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2015학년도 이후 편입자 포함)	비고
유치원 정교사 (2급), 중등학교 정교사 (2급)	○ 전공과목 : 42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5과목 14학점 이상 포함) ○ 교직과목 : 10과목 20학점	○ 전공과목 :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3과목 8학점 이상 포함) ○ 교직과목 : 22학점 이상 (교직이론 7과목 14학점, 교직소양 2과목 4학점, 교육실습 4학점)	○ 전공과목 :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3과목 8학점 이상 포함) ○ 교직과목 : 22학점 이상 (교직이론 6과목 12학점, 교직소양 3과목 6학점, 교육실습 4학점)	
특수학교 정교사 (2급)	○ 전공과목 : 72학점 이상 – 특수교육(공통)관련 전공 : 42학점 이상 포함 (기본이수과목 5과목 14학점 이상 포함) – 표시과목(또는 학교급별) 관련 전공 : 30학점 이상 포함 (기본이수과목 5과목 14학점 이상 포함) ○ 교직과목 : 10과목 20학점	○ 전공과목 : 80학점 이상 – 특수교육(공통) 관련 전공 : 42학점 이상 포함 (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포함) – 표시과목(또는 학교급별) 관련 전공 : 38학점 이상 포함 (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8학점 이상 포함) ○ 교직과목 : 22학점 이상 (교직이론 7과목 14학점, 교직소양 2과목 4학점, 교육실습 4학점)	○ 전공과목 : 80학점 이상 – 특수교육(공통) 관련 전공 : 42학점 이상 포함 (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포함) – 표시과목(또는 학교급별) 관련 전공 : 38학점 이상 포함 (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8학점 이상 포함) ○ 교직과목 : 22학점 이상 (교직이론 6과목 12학점, 교직소양 3과목 6학점, 교육실습 4학점)	15학점 이내에 중복학점 인정 가능 (단, 특수(중등)에서 체육 이외의 과목은 중복학점 인정 불가)
전문 상담교사 (2급)	○ 전공과목 : 42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5과목 14학점 이상 포함) ○ 교직과목 : 8과목 16학점 (교과교육영역 2과목 4학점 제외)	○ 전공과목 :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포함) ○ 교직과목 : 22학점 이상 (교직이론 7과목 14학점, 교직소양 2과목 4학점, 교육실습 4학점)	○ 전공과목 :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포함) ○ 교직과목 : 22학점 이상 (교직이론 6과목 12학점, 교직소양 3과목 6학점, 교육실습 4학점)	
성적 기준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사범학부 제외)는 전공과목과 교직 과목의 평균성적이 각각 80/100점 이상	○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교직과목 평균성적 80/100점 이상	
기타	–	○ 교직 적성·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교육	○ 교직 적성·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교육 2회 이상	

2. 복수(다중)전공자 기준

자격종별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2010학년도 이전 편입자 포함)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2011학년도 이후 편입자 포함)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2015학년도 이후 편입자 포함)	비고
유치원 정교사 (2급), 중등학교 정교사 (2급)	○ 전공과목 : 42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5과목 14학점 이상 포함) ○ 교직과목 : 2과목 4학점 (교과교육영역)	○ 전공과목 :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3과목 8학점 이상 포함)	○ 전공과목 :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3과목 8학점 이상 포함)	
특수학교 정교사 (2급)	○ 전공과목 : 72학점 이상 – 특수교육(공통)관련 전공 : 42학점 이상 포함 (기본이수과목 5과목 14학점 이상 포함) – 표시과목(또는 학교급별) 관련 전공 : 30학점 이상 포함 (기본이수과목 5과목 14학점 이상 포함) ○ 교직과목 : 2과목 4학점 (교과교육영역)	○ 전공과목 : 80학점 이상 – 특수교육(공통)관련 전공 : 42학점 이상 포함 (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포함) – 표시과목(또는 학교급별) 관련 전공 : 38학점 이상 포함 (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포함, 교과교육영역 8학점 이상 포함)	○ 전공과목 : 80학점 이상 – 특수교육(공통)관련 전공 : 42학점 이상 포함 (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포함) – 표시과목(또는 학교급별) 관련 전공 : 38학점 이상 포함 (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8학점 이상 포함)	15학점 이내에 중복학점 인정 가능 (단, 특수(중등)에서 체육 이외의 과목은 중복학점 인정 불가)
전문 상담교사 (2급)	○ 전공과목 : 42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5과목 14학점 이상 포함)	○ 전공과목 :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포함)	○ 전공과목 :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포함)	
성적 기준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사범학부 제외)는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의 평균성적이 각각 80점 이상 ○ 사범학부 학생이 교직과정 설치전공(과)을 복수전공 할 경우에는 2005학년도 제2학기부터 이수한 과목에 한하여 복수전공(과)의 교직과목과 전공과목의 평균성적이 각각 80점 이상	○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교직과목 평균성적 80/100점 이상	

※ 특수학교는 표시과목 또는 학교급별이 동일한 경우 상호 인정 가능

3. 특수교육과 복수취득자 기준

– 특수학교(초등), 특수학교(중등) 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종교, 디자인

구분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2010학년도 이전 편입자 포함)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2011학년도 이후 편입자 포함)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2015학년도 이후 편입자 포함)	비고
특수 (초등)	○ 전공 : 42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5과목 14학점 이상 포함–특수교육) ○ 초등 관련 : 3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5과목 14학점 이상 포함) ○ 교직 : 20학점	○ 특수교육(공통) : 42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포함) ○ 초등 관련 : 38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3과목 8학점 이상 포함) ○ 교직 : 22학점 ○ 성적 :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특수교육(공통) : 42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포함) ○ 초등 관련 : 38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3과목 8학점 이상 포함) ○ 교직 : 22학점 ○ 성적 :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교직과목 평균성적 80/100점 이상	중복학점 15학점 이내 인정
특수 (중등)	○ 표시과목관련 : 3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5과목 14학점 이상 포함) ○ 교직 : 4학점(교과교육영역)	○ 표시과목관련 : 38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3과목 8학점 이상 포함) ○ 성적 :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표시과목관련 : 38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3과목 8학점 이상 포함) ○ 성적 :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중복학점 불인정
계	총 126학점 (중복 15학점 인정시 111학점)	총 140학점 (중복 15학점 인정시 125학점)	총 140학점 (중복 15학점 인정시 125학점)	

4. 성적환산 기준(신설 2010.3.1.)

– 환산점수 기준표

성 적	환산점수(100점)	성 적	환산점수(100점)
A^+	97.5	C^+	77
A	92	C	72
B^+	87	D^+	67
B	82	D	62
		F	0

– 100점 환산평균 계산

$$\text{환산평균} = \frac{\Sigma(\text{과목별 취득성적의 환산점수} \times \text{과목별 학점 수})}{\text{수강신청 총 학점 수}}$$

※ Pass/Fail 과목은 계산에 포함하지 않음.

주요 학사제도

1. 수강신청

가. 신청기간

구 분	신 청 시 기
재학생, 복학생	개강 2~3주 전(별도 공고 참조)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1학기만 해당)	2월 중(별도 공고 참조)

나. 신청학점 안내

매학기 수강신청 권장학점 : 12~19학점(4학년인 경우 최소 9학점 이상)
(교무규정 제10조)
〈예외〉
① 직전학기 성적의 평점 평균이 4.3 이상인 자는 21학점까지
※ 단, 직전학기 수강신청 과목 철회자는 제외
② 사회봉사활동 교과목, 특별학점 인정 및 교육봉사활동 교과목은 수강신청학점에서 제외

다. 수강신청 절차

수업시간표 책자 열람 (홈페이지) → 수강신청 일정, 수강신청 방법 등 숙지 → 수강신청 과목 선정 → 수강신청 전산입력 → 수강신청 확인

라. 수강신청 시 유의사항

① 15학점 미만 신청자(4학년의 경우 12학점 미만 신청자)는 성적순에 의하여 지급되는 장학금 수혜대상에서 제외된다.
② 강의시간이 중복되는 과목은 수강신청 할 수 없다(수강신청 시, 중복여부를 반드시 확인).
③ 재학생은 소정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④ 등록금을 납입한 재학생이 수업일수 4분의 1선까지 수강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학기 성적은 교양과목 중 4학점을 "F"로 처리한다.
⑤ 동일한 교과목을 중복 수강하여 취득한 학점은 인정하지 않는다.

⑥ 수강신청하지 않은 과목을 이수하여도 학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⑦ 수강신청한 과목을 이수하지 않으면 “F”로 처리된다.
⑧ 정당한 사유 없이 학칙 및 교무규정에 의한 기준학점을 초과하여 수강신청하거나 학점을 초과 취득한 경우, 학점을 취소한다.
⑨ 4학년은 성적 열람 후 졸업학점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수강신청하여 졸업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마. 수강신청 확인

매학기 정해진 기간(공고 참조) 중에 수강신청을 한 모든 학생은 본교 홈페이지에서 수강신청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본인의 입력오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하여야 한다.

바. 수강신청 정정

① 수강신청한 과목은 임의로 정정하거나 취소할 수 없으며,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수강한 과목의 성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② 수강신청한 과목의 정정 및 취소는 교무처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③ 교무처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수강신청한 과목의 정정 및 취소는 시간표의 변경, 폐강과목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사. 수강신청 과목 철회

수강신청한 과목을 계속 이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무처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2과목에 한하여 학부사무실에서 담당교수, 주임교수,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한 과목은 성적평가에서 제외된다.(교무규정 제16조)

① 철회의 제한 : 수강신청의 철회는 2과목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철회 이후의 수강신청 학점이 최소 12학점 이상(다만, 4학년은 9학점 이상 권장)이 되어야 한다.
② 철회의 불이익 : 수강신청 과목을 철회한 학생은 학점초과신청이나 성적순에 의하여 지급되는 장학금 수혜대상에서 제외된다. 만약 철회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수강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과목의 성적이 “F”로 처리되어 당해 학기 성적에 포함되어 산출된다.

2. 재수강

가. 재수강 대상과목

① 취득한 성적이 D+ 이하인 교과목은 재수강할 수 있다. 다만, 매학기 6학점(F과목의 재수강은 제한없음) 이하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재수강 교과목의 경우 반드시 수강한 과목명과 학점이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과정

변경으로 폐지된 과목은 대체인정 과목으로 허락받아 재수강 할 수 있다(교무규정 제18조).

나. 재수강 신청시기

매학기 수강신청 및 정정기간에 재수강을 신청 할 수 있다.

다. 재수강 과목의 성적

재수강 과목의 성적은 B+ 이하로 평가하며, 재수강한 두 과목을 상호 비교하여 우수한 성적의 과목만 졸업에 반영한다.

라. 재수강과목의 성적증명서 표기

성적증명서에는 수강한 과목 모두를 각기 표기하고, 재수강한 과목명 뒤에는 (재)로 대체인정과목으로 재수강한 과목명 뒤에는 (대재)로 표기한다.

마. 재수강시 유의사항

① 재수강 신청학점도 수강신청 학점에 포함된다.
② D+, D0 성적인 재수강은 6학점 이내로 제한된다(F재수강은 제한 없음).

3. 복수전공 · 부전공 · 융합전공

가. 복수전공

주전공 외에 타 전공에서 적성에 맞게 선택하여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면 이를 인정하고 해당 학위를 수여해 주는 제도이다.

나. 부전공

주전공 외에 타 전공에서 개설한 교과목 중에서 21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이를 인정하고 학위증서에 부전공명을 표기하여 주는 제도이다.

다. 융합전공

①본 대학의 설치된 융합전공에서 개설한 교과목 중에서 21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이를 인정하고 학위증서의 융합전공명의 표기하여 주는 제도이다(문화예술학부 예배사역전공, 디자인영상학부 모션그래픽스전공, 문화상품디자인전공).
②혁신융합학부의 융합전공은 복수전공으로만 이수가 가능함(복수전공 이수 학점표에 따름)

라. 전공선택 및 변경

① 전공선택 및 변경은 교무처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청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전공선택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4. 시험 · 성적 · 학점포기

가. 시험

① 기말시험 : 역량의 평가를 위하여 매 학기말에 실시한다.
② 수시시험 : 역량의 효과적 평가를 위하여 수시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나. 성적

① 교과목의 성적은 수업계획서에 제시된 출석상황과 역량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② 등급 및 평점 : D 이상(P)을 이수, F는 미 이수
③ 학기 평점평균 계산방법

$$\text{학기 평점평균} = \frac{\Sigma(\text{수강신청 과목별 평점} \times \text{과목별 학점수})}{\text{수강신청 총 학점수}}$$

④ 성적 평점 평균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 성적 순위를 정한다.
가) 취득 학점수가 많은 자
나) 취득 과목수가 많은 자
다) 기 취득 학점수가 많은 자
라) 전체학년 평점 평균이 높은 자
마) 연소자 우선
⑤ 성적평가 원칙(교무규정 제30조)
가) A등급(A^+, A)이 25%를 초과할 수 없으며, A등급(A^+, A)과 B등급(B^+, B)의 합이 65%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총장이 인정하는 교과목은 예외로 한다.
나) 외부기관에서 평가하는 교과목은 절대평가로 성적평가를 할 수 있다.
다) 채플과섬김 성적평가는 '채플과섬김 운영규정'에 따른다.

다. 성적 열람 및 정정

교과목 담당교수가 지정한 기간에 본인의 성적을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시에는 과목 담당교수에게 문의하여야 한다(교무규정 제34조).

라. 성적표

① 매학기 방학기간 중에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 할 수 있다.
② 성적표는 1학년(신입생) 및 3학년(편입생)을 대상으로 입학년도 1학기에만 발송한다.

【주의】 교과목당 실제 수업시간 수의 1/4을 초과하여 결석한 자는 출석미달자로 학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주소 또는 연락처 등 개인 신상내용이 변경된 학생은 반드시 본교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변경 사항을 수정, 입력하여 주시기 바람.

5. 학점 등록

가. 학점등록

① 학점등록

• 대상 : 8학기(4학년 2학기) 등록을 하고도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학점 등록을 하는 학생에 대한 등록금은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10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

② 학사학위취득유예

• 대상 : 졸업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교원 자격증 및 각종 자격증 관련 과목 등을 이수하거나 취업준비와 사회적응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졸업을 연기하는 학생에 대한 수업료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 수강신청자는 학점등록 기준 해당액

③ 등록은 해당 학기 등록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6. 조기졸업

가. 조기졸업

조기졸업. 졸업 요건을 갖추고 재학기간 매 학기 성적이 4.2 이상인 자로 TOEIC 750점 이상(영어학전공자는 800점 이상)이며 징계 처분을 받지 않은 학생에 한하여 수업연한을 6개월 단축할 수 있다.

조기졸업 안내〈교무규칙 제21장 참조〉
7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 요건을 갖춘 학생 중 6학기말까지 매 학기 성적 평점 평균이 4.2 이상이며 TOEIC 750점 이상(단, 영어학전공자는 TOEIC 800점 이상)인 학생은 조기졸업 할 수 있다.

7. 휴 학

가. 휴학기간

① 일반 휴학 : 학기 단위로 가능하며 재학 중 통산 2년(4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병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학기를 추가 연장할 수 있음)
② 군입대 휴학 : 병역의무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창업 휴학 : 학기 단위로 최대 2년까지 가능하다.(다만, 학기 단위로 심사하여 창업휴학 유지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④ 임신, 출산, 육아휴학 : 각각 1개 학기에 한함.

나. 제출서류 및 준비물

일반휴학	군입대휴학	질병휴학	창업휴학	임신, 출산, 육아휴학
휴학원 1부, 보호자 사유서 1부	휴학원 1부, 입영 입증서류 1부	휴학원 1부, 보호자사유서 1부, 2차 진료기관의 전문의가 발행한 2주 이상의 입원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 1부	휴학원 1부, 신청자격 증빙자료 1부, 지도교수 추천서 1부 ※ 신청자격 : 창업교육운영 규칙 제7조 참조	진단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다. 휴학 신청 절차

휴학신청서 원서 배부(학부사무실, 인터넷 홈페이지) → 휴학원 작성 → 지도교수 확인 → 휴학원 및 서류 제출(학부사무실) → 학적변동 확인(인터넷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라. 휴학시 성적처리

① 학기중 일반 휴학한 학생은 수강을 포기한 것으로 처리한다(수업일수 3/4 이내에만 휴학가능).
② 군입대휴학자 중 출석일수 3/4 이상 출석한 자로 성적인정확인서 제출자에 한하여 해당 학기의 성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군입대 휴학자 중 입영일자가 기말고사 이후일 경우 기말고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마. 휴학 연장

휴학기간이 경과한 자가 질병, 군입대 등 부득이한 경우 통산 휴학기간의 범위내에서 휴학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휴학기간 만료 1개월 이전에 휴학연장원을 학부사무실로 제출(절차 및 제출서류는 휴학과 동일)하여야 한다.

① 학업을 계속하지 않고 입영준비를 하려면 입영통지서 발부 전까지 일반휴학을 한 후 입영통지서를 발부 받았을 때 군입대휴학으로 연장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입대휴학자가 귀향조치를 받았을 때에는 귀향증을 지참하여 1주일 이내에 휴학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바. 휴학을 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둘 사항

① 군입대, 질병, 임신, 출산, 육아 휴학 후 다시 등록(복학)할 경우 등록금 납부

구 분	군입대, 질병, 임신, 출산, 육아 휴학하는 당해 학기 때 성적인정을 받지 않고 휴학한 학생이 복학하는 경우	군입대, 질병, 임신, 출산, 육아 휴학하는 당해 학기 때 성적인정을 받고 휴학한 학생이 복학하는 경우
등록금 납부	당해 학기의 등록금 전액 인정	당해 학기의 등록금 전액 납부

② 일반 휴학 후 복학할 경우 등록금 납부 안내

구 분	휴학일이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경과 전	휴학일이 학기개시일 이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경과 전	휴학일이 학기개시일 이후 6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90일 경과 전	휴학일이 학기개시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등록금 납부	기 납부한 등록금 전액 인정	기 납부한 등록금 2/3 인정	기 납부한 등록금 1/2 인정	기 납부한 등록금 전액 소멸

8. 복 학

가. 복학시기

①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자는 교무처에서 정하는 기간내에 복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 입대 휴학자 중 군 제대일자가 수업일 수 1/4 이내일 경우 또는 소속 부대장의 휴가 또는 수강허가 등으로 사실상 복학허용 마감일 이전부터 출석이 가능한 경우에는 전역예정증명서, 수강허가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조기 복학을 신청할 수 있다.

나. 복학 신청 절차

① 해당학기 복학예정자

인터넷 홈페이지 → 종합정보시스템 → 복학신청(온라인)

② 조기복학 희망자

복학원 배부(학부사무실, 인터넷 홈페이지) → 복학원 작성 → 복학원 및 서류제출(학부사무실)

9. 전부(과)

가. 지원자격

① 2학기 이상 등록자

② 신청 학기까지의 평점평균이 2.0 이상

③ 재학기간 중 최대 3회까지 가능

④ 학년별 수료학점 충족 가능한 자

나. 전부(과) 허용인원

전부(과)의 허용인원 : 해당년도 전입학부(과) 입학정원의 10% 이내
전출학부(과)의 전출 허용인원 : 해당년도 전출학부(과) 입학정원의 10% 이내

다. 전형방법

전형은 전부(과) 신청서에 의한 제74조의 신청자격 서류심사 후 해당학부에서 주관하여 성적과 자체 선발 방법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라. 전형일정

전형일정 등 세부사항은 학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시행 학년도마다 따로 정한다.

마. 교육과정 이수

전부(과)가 허가된 학생은 전부(과)한 학년부터 동일학년 당초 입학자와 동일하게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바. 등록

전부(과)가 허가된 학생은 학교에서 지정한 소정의 등록절차를 필하여야 한다.
(타 계열 전부(과) 시, 차액 환불 및 추가 납부 포함)

10. 자퇴 · 제적

가. 제출서류 및 준비물

자퇴원 1부, 보호자 사유서 1부, 학부장 · 주임교수 · 담임교수 소견서 1부, 학생증, 타 대학 합격증(자퇴 사유가 타 대학 신 · 입학인 경우), 기타 관련 서류

나. 자퇴 신청 절차

자퇴원 배부(학부사무실, 인터넷 홈페이지) → 자퇴원 작성 → 학부장 · 주임교수 · 담임교수 확인 → 학생생활상담센터 → 학생처 → 자퇴원 및 서류 제출(교무처)

다. 자퇴 시기 및 등록금 반환

① 학기개시일(입학생의 경우는 입학일) 전일까지 : 등록금 전액 환불
② 학기개시일 부터 30일까지 : 등록금 5/6 환불
③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경과 전 : 등록금 2/3 환불
④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90일 경과 전 : 등록금 1/2 환불
⑤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라. 제적대상

① 휴학 기간 만료 후 소정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않은 자(미복학 제적)
② 소정의 등록기간 내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미등록 제적)
③ 재학 중 연속하여 3회 학사경고를 받은 자(학사제적)
④ 이중학적을 가진 자
⑤ 사망, 질병 기타 학업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⑥ 기독교 진리에 위배되고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11. BU-TOP인증제

가. BU TOP 인증제

1) BU TOP 인증제 개요

① BU TOP 인증제 정의

○ 대학에서 설정한 역량기반 교육을 통해 "혁신적 지성·글로컬소통·실천적 섬김의 역량을 갖춘 미래형 TOP인재 육성"의 대학교육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자체 교육품질인증제도

② BU TOP 인증제 시행 개요

○ 시행시기 : 2020. 3. 1
○ 적용학년 : 2021학년도 신입생부터 전면 적용(2020학년도 일부 학부 시범 적용)
○ 인증유형 : 졸업인증(전공역량인증+핵심역량인증), 우수역량인증
○ 평가영역 : 전공교과영역, 교양교과영역, 비교과영역

③ BU TOP인증 절차

○ 졸업인증(재학생 전체 적용)과 우수인증(성취도 우수집단 적용)으로 구분 시행
▸ 졸업인증 : 『전공역량』 및 『핵심역량』으로 각각 시행하며, 각 핵심역량별로 최저 요건 충족 시 통과(p)한 것으로 인증함
▸ 우수인증 : 4대핵심역량[1]+전공역량 성취도 점수 상위 5% 이상 학생에게 인증

④ BU TOP 인증결과 활용

○ 재학생 졸업인증(졸업인증제) 및 각종 장학금 지급 기준으로 활용

1) 우리 대학의 핵심역량은 4대 핵심역량과 8대 하위역량으로 구성되며, 전공별로 설정한 전공역량이 있음.

핵심역량	혁신		소통		관계		섬김	
하위역량	창의융합	문제해결	의사소통	글로벌	대인관계	협업	사회공헌	섬김리더십

2) BU TOP 인증(안) : 인증유형, 인증영역, 인증기준

인증유형	인증영역	인증기준
졸업인증	전공역량에 대해 인증	•전공역량 교과 성취도 평균점수 70점 이상
		•전공역량 비교과 취득 점수 40점 이상
	4대 핵심역량별로 각각 인증	•각 핵심역량별 교과 성취도 평균 점수 70점 이상
		•각 핵심역량별 비교과 취득 점수 40점 이상
우수인증	전공역량 및 4대 핵심역량	•전공역량 및 4대 핵심역량별 성취도 점수 상위 5% 이상

※ 졸업인증의 경우 비교과에서 취득한 역량점수의 10%를 교과 점수(전공역량 및 핵심역량)로 인정할 수 있음
※ 우수인증은 교과점수 100%, 비교과점수 10%를 합산하여 점수가 상위 5%인 자에게 수여

나. BU-TOP 세부 인증 안내

○ BU TOP 인증은 졸업인증과 우수인증으로 구분 시행함

▸ 졸업인증은 『전공역량』, 『핵심역량』을 인증하는 것으로 재학생 전체에게 적용하며, 각 역량별로 인증기준 충족 시 통과(p)한 것으로 인증함

▸ 우수인증은 전공역량과 핵심역량별로 성취도 점수 상위 5%인 학생에게 인증함

1) 졸업인증 중 전공역량

교과영역	•전공교과에서 취득한 전공역량 성취도 점수 70점
비교과영역	•학부/전공별 비교과에서 취득한 전공역량 취득 점수 40점

구분	내용
교과영역	•인증내용 : 전공역량(통합) •인증기준 : 전공역량 성취도 점수 70점 •점수산식 : (역량취득점수 * 역량시간) / 총역량시간 $\frac{\sum_{i=1}^{n}\{\sum_{j=1}^{m}(\text{역량별 취득점수}_j \times \text{역량시간}_j)\}_i}{\sum_{i=1}^{n}\{\sum_{j=1}^{m}\text{역량시간}_j\}_i}$ $i=$ 교과목, $j=$ 역량 •평가방식 : 전공개설 과목별 역량 성취도 평가방식 적용 •인증부여 : 전공역량 인증기준(평균점수 70점) 충족 시 통과(p)
비교과영역	•인증내용 : 전공역량 •인증기준 : 전공역량 취득 점수 40점 •점수산식 : 전공 하위역량별 취득 점수 합 •평가방식 : 비교과프로그램 참여시간을 점수로 환산(1h=2점), 프로그램 난이도 가중치 반영[2] •인증부여 : 전공역량 취득 점수가 인증기준(40점) 충족 시 통과(p)

☞ 전공하위역량별 원점수 최저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 비교과에서 취득한 전공역량 점수의 10%까지 교과 점수로 인정할 수 있음

2) 프로그램 난이도에 따라 3등급으로 분류하고 기준 점수(1h=2점)에서 각각 1.0(level1), 1.5(level2), 2.0(level3)의 가중치 부여

2) 졸업인증 중 핵심역량

교과영역	•교양교과 및 전공교과에서 취득한 4대 핵심역량별 성취도 평균점수 70점
비교과영역	•비교과에서 취득한 4대 핵심역량별 취득점수 40점(BU-POINT)

구분	내용
교과영역	• 인증내용 : 4대 핵심역량 • 인증기준 : 4대 핵심역량별 성취도 점수 70점 • 점수산식 : 교양교과+전공교과에서 취득한 4대 핵심역량별 성취도 평균 점수 $\frac{\sum_{i=1}^{n}\{\sum_{j=1}^{m}(\text{역량별 취득점수}_j \times \text{역량시간}_j)\}_i}{\sum_{i=1}^{n}\{\sum_{j=1}^{m}\text{역량시간}_j\}_i}$ $i=$ 교과목, $j=$ 역량 • 평가방식 : 교양교과 및 전공교과 핵심역량 성취도 평가방식 적용 • 인증부여 : 4대 핵심역량별 인증기준 70점 충족 시 통과(p)
비교과영역	• 인증내용 : 4대 핵심역량(혁신, 소통, 관계, 섬김)* • 인증기준 : 4대 핵심역량별 취득 점수 40점 • 점수산식 : 4대 핵심역량별 취득 점수 합 • 평가방식 : 비교과프로그램 참여 시간을 점수로 환산(1h=2점). 프로그램 난이도 가중치 반영 • 인증부여 : 4대 핵심역량별 취득 점수 40점 충족 시 통과(p)

☞ 교과 평균점수가 70점에 미달할 경우 비교과에서 취득한 핵심역량 점수의 10%까지 교과영역 점수로 인정함

① 비교과프로그램별 난이도 가중치는 아래 기준을 적용하며, 세부적으로는 주관부서 및 비교과운영위원회에서 프로그램 난이도 가중치 적용(level1-1.0, level2-1.5, level3-2.0)

구분	내용	가중치
Level1	• 10시간 미만 프로그램 중 난이도가 낮은 비교과 프로그램(특강, 평생담임교수 상담 등)	1
Level2	• 학기당 10시간~20시간 미만의 주기성을 갖는 난이도가 보통인 대학·학부 주관 비교과프로그램 (대학 주관 봉사활동, 대학홍보도우미활동 등)	1.5
Level3	• 학기당 20시간 이상의 주기성을 갖는 난이도가 높은 대학·학부 주관 비교과프로그램 (사회공헌활동 등)	2.0

② 개인주도활동의 인정점수 및 역량비율 배분은 학부/부서 의견을 취합하여 비교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시간 산정이 어려운 개인 활동은 참여활동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구분	개인주도 활동(인정점수 예)	비고
대회참여	• 국제대회입상(10), 전국대회입상(9), 지역대회입상(8), 총장상(7), 교내기관장상(6), 국제 · 전국 · 교내대회 참가(2)	
자격증	• 기술사(10), 기능장(9), 기사(8), 국가전문자격증(8), 일반자격증(6), 기타(2)	
학술활동	• 국제논문(10), 등재 · 등재후보지 이상(9), 전국규모 일반논문(8), 교내(6)	
조직활동	• 전국조직(8), 국내 시도단위(7), 교내 전체 단위(6), 교내 부분 단위(단대, 기숙사 등)(5)	
학회발표	• 국제학회(10), 전국학회(8), 교내학회(5)	

구분	내용	핵심역량
외국어	점수A(700이상)/ 점수B(600이상)/ 점수C(500이상) 등으로 구분	소통
	일본어, 중국어(HSK), 기타 외국어	
어학실무	해외연수프로그램(개인)	
	기타 해외연수관련 프로그램(교외)	
사회봉사	국내 봉사활동(교외)	섬김
	국외 봉사활동(교외)	
	기부활동(인적/물적/헌혈 등 포함)	
수상실적	교내(총장), 교내(학부)	혁신
	교외(국내), 교외(국외)	
자격증	국가공인자격증	전공/혁신
	민간자격증	
	기타자격증	
조직활동	교외조직활동	섬김
학술활동	교외특강(외부기관 인증서류)	혁신
	논문게재(등재후보지 이상, 일반학술지)	

3) 우수인증

구분	내용
전공역량 및 핵심역량	•인증범위 : 전공역량 및 4대 핵심역량별로 인증 •인증기준 : 전공역량 및 4대 핵심역량별 교과 및 비교과 성취도 점수 상위 5% 이상 •점수산식(교과 · 비교과 비율 차등 적용) – 전공역량 : 교과전공역량 성취도 평균점수 * 1.0+비교과 전공역량 취득점수 * 0.1 – 핵심역량 : 교과핵심역량 성취도 평균점수 * 1.0+비교과 핵심역량 취득점수 * 0.1 •인증부여 : 전공역량 및 4대 핵심역량별로 상위 5%인 자에게 우수인증(BU Honor Members) 수여

☞ 우수 인증자에게 우수인증(BU Honors Members) 수여

12. 특별학점 인정제

가. 신청대상 : 7학기 등록자까지

나. 신청기간 : 1학기-5월, 2학기-11월

다. 특별학점 운영

① 본교 입학일 이후 취득한 자격증(시험) 및 어학능력시험 점수를 우리대학에서 인정하는 과목의 학점으로 인정
② 인정과목수 : 자격 1종(시험)에 대하여 1과목만 인정
③ 인정과목 성적 : Pass 또는 Fail로 부여하고 졸업학점으로만 인정
④ 자격증(시험)의 수가 많을 경우에는 8학점 이내에서 인정(인정학기 수강신청학점에는 미포함)
⑤ 중복혜택 금지(자격 1종에 1과목을 인정받을 경우 졸업평가시험 면제 등 중복혜택 금지)

라. 특별학점 시행내역

□ 교양

구 분	인정자격증 또는 어학능력시험	인정기준 (점수 등)	인정과목명	인정학점
글로벌역량	토익(TOEIC)	740	영어읽기와쓰기 영어듣기와말하기 중 1과목	각 2학점
	토플(TOEFL)	IBT 78점, CBT 210점		
	텝스(TEPS)	645		
	플렉스(FLEX)	675		

□ 전공

전 공 명	인정자격증 또는 어학능력시험	인정기준 (점수 등)	인정과목명	인정학점
영어학	토익	800점	토익1	각 3학점
	텝스	712점		
	토플	IBT 87점 CBT 227점		
일본어학	일본어능력시험(JLPT)	1급	일본어능력시험N2(독해)	
	JPT	800점		
	JLPT	2급 이상	초급일본어	
	JPT	600점 이상		
	JLPT	3급 이상	일본어첫걸음	
	JPT	500점 이상		
러시아어학	러시아어토르플(TORFL)	2단계	러시아어토르플1	
청소년학	청소년지도사3급	자격증취득	기초교과군 교과목(사회과학의 이해, 현장실무통계, 기독교와 사회복지) 중 1과목	3학점

전 공 명	인정자격증 또는 어학능력시험	인정기준 (점수 등)	인정과목명	인정학점
경찰행정학	변호사	자격증취득	민사소송법	3학점
	고등고시 (행정, 외무, 입법, 법원행정)	최종합격	국제법, 행정법2, 민사소송법 중 1과목	3학점
	법원직 · 검찰사무직 공무원	최종합격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중 1과목	3학점
	일반행정 공무원	최종합격	행정법2	3학점
	법무사	자격증취득	헌법판례연구	2학점
	변리사	자격증취득	지식재산권법	2학점
	감정평가사	자격증취득	보험해상법	2학점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자격증취득	민법판례연구	2학점
행정학	정책분석사	자격증취득	정책분석과 평가	3학점
	행정사	자격증취득	행정과 비정부기구	3학점
	일반행정공무원, 소방공무원	최종합격	행정과 비정부기구	3학점
경찰행정학	경찰공무원	최종합격	경찰학연습(3),경찰형사법연습(3), 경찰체육실습(2),경찰현장실습(2) 중 1과목	각 학점
	교정공무원, 보호직공무원	최종합격	경찰학연습,경찰형사법연습, 범죄예방론 중 1과목	3학점
	소방공무원	최종합격	피해자학	3학점
	법원직 · 검찰사무직 공무원	최종합격	형사소송법(3), 경찰행정법 I (2), 경찰행정법 II (2), 경찰형사법연습(3)중 1과목	각 학점
	경비지도사	자격증취득	민간경비론, 민간경비실습 중 1과목	2학점
	화재조사관	자격증취득	경찰수사론	3학점
	빅데이터큐레이터 2급	자격증취득	빅데이터개론, 빅데이터분석론 중 1과목	2학점
범죄학	경찰공무원,교정공무원	최종합격	범죄예방론	3학점
	소방공무원	최종합격	피해자학	3학점
	법원직 · 검찰사무직 공무원	최종합격	형사소송법	3학점
	경비지도사, 일반경비지도사, 신변보호사	자격증취득	민간경비론	2학점
	화재조사관	자격증취득	과학수사연구	2학점
	빅데이터큐레이터 2급	자격증취득	범죄통계학	3학점
교정보안학	교정직공무원, 보호직공무원	최종합격	형사정책, 교정학연구 중 1과목	3학점
	경찰공무원	최종합격	범죄예방론	3학점
	법원직 · 검찰사무직 공무원	최종합격	형사소송법	3학점
	일반행정 공무원	최종합격	경찰행정법	3학점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자격증 취득	경찰행정법	2학점
	경비지도사	자격증취득	경찰보안론	3학점
회계학	세무사 1차	최종합격	세무회계사례연구	3학점
	회계사 1차	최종합격	회계감사	3학점
관광경영학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취득	관광학원론, 관광법규와정책 중 1과목	2학점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증취득	관광학원론	2학점
	컨벤션 기획사	자격증취득	MICE경영론, MICE실무 중 1과목	3학점
	투어컨덕터(Tour conductor)	자격증취득	투어오퍼레이션실무	3학점
호텔경영학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취득	관광학원론	2학점
	호텔서비스사	자격증취득	호텔경영론	2학점
	전산회계1급	자격증취득	호텔수익관리론	3학점
인테리어 디자인	실내건축기사	자격증취득	EIA인간공학, EIA실내디자인론, EIA실내건축재료, EIA실내건축일반, EIA실내건축환경 중 1과목	2학점
			EIA실내설계시공실무, EIA색채학 중 1과목	3학점
	컬러리스트기사	자격증취득	EIA색채학	3학점
공연예술 (실용작곡)	무대음향 자격증 3급	자격증취득	음향학	2학점

13. 백석멘토링

가. 백석멘토링 운영 시기

① 입학부터 **졸업까지 평생담임교수로부터 대학생활 및 진로에 대한 상담과 취·창업지도를 받게 된다.**

② 1학년 1학기 학생은 『대학생활과 진로』과목을, 2학년 1학기 학생은 『커리어 개발』과목을, 3학년 2학기 학생은 『프런티어십』과목을, 4학년(7,8학기 등록자) 학생은 『성공, 취·창업과 진로』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나. 백석멘토링 학년별 운영

① 『대학생활과 진로』 : 신입생은 수강신청 시, 선택한 본인의 희망전공에 해당하는 『대학생활과 진로』 강좌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해당과목의 담당교수가 4년간 평생담임교수가 된다. 평가는 Pass/Fail로 하며, 학점은 부여하지 않는다.

② 『커리어 개발』 : 2학년 1학기 수강신청 시, 본인의 평생담임교수의 『커리어 개발』과목으로 신청 처리된다. 평가는 Pass/Fail로 하며, 학점은 부여하지 않는다.

③ 『프런티어십』 : 3학년 2학기 수강신청 시, 본인의 평생담임교수의 『프런티어십』과목으로 신청 처리된다. 평가는 Pass/Fail로 하며, 학점은 부여하지 않는다.

④ 『성공, 취창업과 진로』 : 4학년 2학기 수강신청 시, 본인의 평생담임교수의 『성공, 취창업과 진로』 과목으로 신청 처리된다. 평가는 Pass/Fail로 하며, 1학점이 부여된다.

다. 『성공, 취·창업과 진로』 과목 안내

① 4학년(7, 8학기 등록자) 재학생은 현재의 평생담임교수가 담당하는 『성공, 취·창업』 강좌로 일괄 수강신청이 된다.

② 조기취업자는 소속 학부로 조기취업원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 절차를 밟아 과목이수로 처리한다.

라. 평생담임교수와 상담

– 배정된 평생담임교수를 통하여 학교생활 및 진로에 대한 체계적 상담과 취·창업지도를 받게 된다.

14. 교양 교과목 수준별 수업 운영 관련 이수 안내

▣ 2018학년도 이후 신입생

가. 글로벌역량(영어읽기와쓰기) 교과목

① 대상 : 전체 신입생

② 수준별 수업 이수 방법 : 본인 영어수준(레벨)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③ 영어수준(레벨) 결정: 신입생 기초학력진단 검사 결과에 따라 해당하는 영어수준(레벨) 결정

※ 영어진단 평가 미응시자 및 영어수준(레벨)이 없는 학생은 트랙 B로 결정

영어수준(Level)	영어진단 평가 성적	비 고
트랙 A	상위(20% 내외)	
트랙 B	중간	
트랙 C	하위(20% 내외)	

④ 영어수준(레벨) 변경 : 직전학기 글로벌역량 교과목의 성적에 따라 매 학기 등급이 변경될 수 있으며,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수강신청 기간 이전부터 확인이 가능함

영어수준 (Level)	직전학기 영어성적 결과	다음 학기의 레벨	비 고
트랙 A	○ A등급(A+, A), B등급(B+, B), C등급(C+, C)	○ 변동 없음	절대평가
	○ D등급(D+, D), F등급	○ 트랙 B로 변경	
트랙 B	○ A등급(A+)	○ 트랙 A로 변경	
	○ A등급(A), B등급(B+, B), C등급(C+, C)	○ 변동 없음	
	○ D등급(D+, D), F등급	○ 트랙 C로 변경	
트랙 C	○ A등급(A+)	○ 트랙 B로 변경	
	○ A등급(A), B등급(B+, B), C등급(C+, C) D등급(D+, D), F등급	○ 변동 없음	

⑤ 기타 유의사항

- 글로벌역량 교과목은 1학년 1학기부터 2학년 1학기까지 매학기 1과목씩(총 3과목) 필수 이수해야 하는 과목으로, 2~3과목을 한 학기에 이수할 수 없음
- 글로벌역량 교과목 이수 세부 내역

과 목 명		학점	권장이수시기 (학년-학기)	이수조건
전체 학부	영어읽기와쓰기(A, B, C트랙) 중 택1	2	1-1	3과목 6학점 이수
	영어듣기와말하기(A, B, C트랙) 중 택1	2	1-2	
	실전영어회화(A, B, C트랙) 중 택1	2	2-1/2-2	

나. 분야별맞춤형글쓰기(인문사회글쓰기, 예술표현과 글쓰기) 교과목

① 대상 : 2020학년도 이후 인문사회계열(기독교, 어문, 사회복지, 경찰, 경상, 관광, 사범학부) 신입생

② 수준별 수업 이수 방법 : 본인의 국어수준(레벨)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③ 국어수준(레벨) 결정 : 신입생 기초학력진단 검사 결과에 따라 해당하는 국어수준(레벨) 결정

※ 국어진단 평가 미응시자 및 국어수준(레벨)이 없는 학생은 트랙 B로 결정

국어수준(Level)	국어진단 평가 성적	비 고
트랙 A	90% 내외	
트랙 B	10% 내외	

다. 수학및기초과학(대학수학, 물리학의이해, 생물학의이해,) 교과목

① 대상 : 2020학년도 이후 자연계열(ICT, 보건학부) 신입생

- ICT학부 : 대학수학
- 보건학부 : 물리학의이해(보건학부 안경광학과), 생물학의이해(보건학부 안경광학과 외)

② 수준별 수업 이수 방법 : 본인의 수준(레벨)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③ 수준(레벨) 결정 : 신입생 기초학력진단 검사 결과에 따라 해당하는 수준(레벨) 결정

※ 기초학력진단 평가 미응시자 및 수준(레벨)이 없는 학생은 트랙 B로 결정

수학수준(Level)	수학진단 평가 성적	비 고
트랙 A	80% 내외	
트랙 B	20% 내외	

물리학수준(Level)	물리학진단 평가 성적	비 고
트랙 A	50% 내외	
트랙 B	50% 내외	

생물학수준(Level)	생물학진단 평가 성적	비 고
트랙 A	80% 내외	
트랙 B	20% 내외	

▣ 2017학년도 이전 입학생

가. 수준별 수업 이수 방법

– 영어수준(레벨)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이수해야 함

나. 영어수준(레벨) 결정

– 영어진단 평가 미응시자 및 영어수준(레벨)이 없는 복학생은 세계화과목(대학영어, 생활영어) 직전학기 성적에 따라 레벨 결정

영어수준(Level)	세계화과목 성적	비고
트랙 A	A+	
트랙 B	B, B+, A	
트랙 C	C+ 이하	

※ 직전학기 성적이 없는 경우 트랙 B, 두 개 이상인 경우 좋은 성적으로 결정.

다. 영어수준(레벨) 변경 기준

– 영어수준(Level)은 직전학기 글로벌역량(세계화)과목의 성적 결과에 따라 매 학기 등급이 변경될 수 있으며,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수강신청 기간 이전부터 확인이 가능함

영어수준 (Level)	직전학기 영어성적 결과	다음 학기의 레벨	비 고
트랙 A	○ A등급(A+, A), B등급(B+, B), C등급(C+, C)	○ 변동 없음	
	○ D등급(D+, D), F등급	○ 트랙 B로 변경	
트랙 B	○ A등급(A+)	○ 트랙 A로 변경	10% 이내
	○ A등급(A), B등급(B+, B), C등급(C+, C)	○ 변동 없음	
	○ D등급(D+, D), F등급	○ 트랙 C로 변경	
트랙 C	○ A등급(A+)	○ 트랙 B로 변경	10% 이내
	○ A등급(A), B등급(B+, B), C등급(C+, C) D등급(D+, D), F등급	○ 변동 없음	

라. 기타 유의사항

– 세계화과목은 1학년 1학기부터 2학년 1학기까지 매학기 1과목씩 필수 이수해야 하는 과목으로, 2~3과목을 한 학기에 이수할 수 없음

– 세계화과목 이수 세부 내역

과 목 명		학점	권장이수시기 (학년–학기)	이수조건
전체 학부	영어읽기와쓰기(A, B, C트랙) 중 택1	2	1–1	3과목 6학점 이수
	영어듣기와말하기(A, B, C트랙) 중 택1	2	1–2	
	실전영어회화(A, B, C트랙) 중 택1	2	2–1/2–2	

※ 1학년 1학기 대학영어1 재수강 대상자는 「Academic English」로 이수함.

15. 교원자격증

가. 교원자격증의 수여

교원자격증은 교직과정(사범학부 포함)을 이수하고 교원자격무시험검정에 합격한 자에게 수여한다.

나. 교직과정 이수 신청

① 대 상 자 : 교직과정이 설치된 전공(과)에 입학한 학생
② 신청시기 : 2학년 1학기 초 사범학부에서 정하는 기간
③ 선발방법 : 1학년 2학기까지의 성적 및 면접으로 선발함

다. 이수학점 및 성적

①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2010학년도 이전 편입자 포함)
- 전공과목 : 42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5과목 14학점 포함) 단, 특수학교의 경우 전공과목은 72학점 이상이며 특수교육(공통) 42학점과 표시과목(또는 학교급별) 관련 전공 30학점을 이수하여야하고, 15학점 이내에서 중복학점 인정 가능함(단, 특수(중등)에서 체육 이외의 과목은 중복학점 인정 불가)
- 교직과목 : 「교직과목」표에 정한 10과목 20학점. 단, 전문상담교사(2급)는 "교직이론영역" 7과목(14학점)과 "교육실습영역" 1과목(2학점)만 이수하고,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해당 표시과목의 "교과교육영역" 2과목(4학점)만 이수함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사범학부 제외)는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의 평균성적이 각각 80/100점 이상

②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2011학년도 이후 편입자 포함)
- 전공과목 : 5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교과교육영역 3과목 8학점이상 포함). 단, 특수학교의 경우 전공과목은 80학점 이상으로 특수교육(공통) 42학점과 표시과목(또는 학교급별) 관련 전공 38학점 이상(교과교육영역 8학점 이상 포함) 포함하여야 하고 15학점 이내에 중복학점 인정 가능함(단, 특수(중등)에서 체육 이외의 과목은 중복학점 인정 불가)
- 교직과목 : 22학점 이상(교직이론 7과목 14학점, 교직소양 2과목 4학점, 교육실습 4학점)
-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편입생의 경우 전적대학에서 취득한 교직과목에 한하여 과목명과 학점이 동일

한 경우에만 인정할 수 있다.

③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2015학년도 이후 편입자 포함)

- 전공과목 : 5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교과교육영역 3과목 8학점 이상 포함). 단, 특수학교의 경우 전공과목은 80학점 이상으로 특수교육(공통) 42학점과 표시과목(또는 학교급별) 관련 전공 38학점 이상(교과교육영역 8학점 이상 포함) 포함하여야 하고 15학점 이내에 중복학점 인정 가능함(단, 특수(중등)에서 체육 이외의 과목은 중복학점 인정 불가)
- 교직과목 : 22학점 이상(교직이론 6과목 12학점, 교직소양 3과목 6학점, 교육실습 4학점)
-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교직과목 평균성적 80/100점 이상

라. 교원자격증의 복수전공

① 대상자 : 교직과정이수예정자 및 사범학부 재학생

② 대상 전공(과) : 사범학부 전 학과 및 교직과정이 설치된 전공(과)

③ 신청기간

- 교직과정이수 예정자 : 2학년 2학기
- 사범학부 재학생 : 2학년 1학기

④ 기타사항 : 편입생은 3학년 1학기 말에 신청 가능하며, 신청인원이 선발정원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별도의 과정을 거쳐 선발한다.

마. 교원자격증 복수전공자의 이수학점

①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2010학년도 이전 편입자 포함)

- 전공과목 : 42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5과목 14학점 포함). 단, 특수학교의 경우 전공과목은 72학점 이상이며 특수교육(공통) 42학점과 표시과목(또는 학교급별) 관련 전공 30학점을 이수하여야하고, 15학점 이내에서 중복학점 인정 가능함(단, 특수(중등)에서 체육 이외의 과목은 중복학점 인정 불가)
- 교직과목 : 교직과목표의 교직과목 중 “교과교육영역” 2과목(4학점). 단, 전문상담교사(2급)는 해당 없음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사범학부 제외)는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의 평균성적이 각각 80점 이상이며, 사범학부 학생이 교직과정 설치전공(과)을 복수전공 할 경우에는 2005학년도 제2학기부터 이수한 과목에 한하여 복수전공(과)의 교직과목과 전공과목의 평균성적이 각각 80점 이상이어야 함

②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2011학년도 이후 편입자 포함)
- 전공과목 : 5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교과교육영역 3과목 8학점이상 포함). 단, 특수학교의 경우 전공과목은 80학점 이상으로 특수교육(공통) 42학점과 표시과목(또는 학교급별) 관련 전공 38학점 이상(교과교육영역 8학점 이상 포함) 포함하여야 하고 15학점 이내에 중복학점 인정 가능함(단, 특수(중등)에서 체육 이외의 과목은 중복학점 인정 불가)
-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③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2015학년도 이후 편입자 포함)
- 전공과목 : 5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교과교육영역 3과목 8학점 이상 포함). 단, 특수학교의 경우 전공과목은 80학점 이상으로 특수교육(공통) 42학점과 표시과목(또는 학교급별) 관련 전공 38학점 이상(교과교육영역 3과목 8학점 이상 포함) 포함하여야 하고 15학점 이내에 중복학점 인정 가능함(단, 특수(중등)에서 체육 이외의 과목은 중복학점 인정 불가)
-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교직과목 평균성적 80/100점 이상

바. 교육봉사활동 이수

① 교육봉사란?

예비교원이 가진 재능을 유·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는 봉사**

※ 성인 대상 교육은 교육봉사 불인정(예시 : 노인 문예교실)

② 대상기관
-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지역아동센터 등은 인정하지 않음

※ 교육실습 중 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은 학생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교육실습 중 교육봉사활동 학점을 이수하고자 할 경우 봉사활동 기관이 교사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과 일치하지 않아도 됨

③ 활동 내용
- 보조교사, 부진아 학생지도, 방과후교사, 초등돌봄교실 및 자유학기제 관련 활동, 다문화 학생지도, 학생 생활지도 관련 활동, 재능기부 등을 **교육적인 방법으로 교육봉사 실시**

④ 이수기간

- 일반학부 교직과정 설치 전공 : 2학년 2학기~4학년 1학기
- 사범학부 : 1학년 2학기~4학년 2학기

⑤ 교육봉사활동 절차

교육봉사활동 신청서 검토 및 승인 **학생 → 교수**	➡ 승인 받은 교육봉사활동 신청서 제출 **학생 → 학부**	➡ 교육봉사활동 동의서 해당 기관 발송 **학부 → 기관**
➡ 교육봉사활동실시 **학생**	➡ 교육봉사활동일지 작성 **학생과 기관**	➡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작성 **기관**
➡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검토 및 승인 **학생 → 교수**	➡ 승인된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제출 **학생 → 학부**	➡ 교육봉사활동 학점 부여 (60시간 이상) **사범학부장**

⑥ 기타 안내

- 휴학 중 실시한 봉사활동 실적 인정
- 사회봉사Ⅰ,Ⅱ의 봉사실적과 중복 인정 불가(1일 최대 8시간 인정)

16. 사회복지사 자격증

※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회복지사 자격증에는 1급과 2급 자격증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사회복지관련교과목(필수과목 10과목, 선택과목 4과목 이상. 단, 20학번부터는 선택 7과목 이상)을 모두 이수하고 졸업한 자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및 각 시도 사회복지사협회에 신청하는 것으로 취득할 수 있으며, 1급 자격증은 2급 자격증 취득 요건을 갖춘 자가 매년 국가에서 실시하는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할 때 취득할 수 있다.

가.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및 2급 자격증 취득 요건

※ 2급 자격증은 자격증과 관련하여 개설된 과목(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 단, 20학번부터는 선택 7과목 이상)들을 이수하면 보건복지부로부터 교부 받을 수 있다.

① 2급 자격증 취득 요건

구 분	사회복지사 2급
이수학점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 단, 20학번부터는 선택 7과목 이상) 이수
이수과목	아래(이수과목표) 참조
자격증 신청시기	졸업 후 본인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및 각 시도 사회복지사협회에 신청
자격증 신청서류	자격증 발급 신청서 1부, 졸업(학위취득자만 가능)증명서 1부, 성적증명서 1부, 사진 2매, 수수료

② 이수과목표

구 분	교 과 목			비 고
필수과목	– 사회복지개론 – 사회복지실천론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 사회복지정책론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지역사회복지론 – 사회복지현장실습	– 사회복지조사론 – 사회복지행정론 – 사회복지법제론	10과목
선택과목	– 사회복지역사 – 사회복지자료분석론 – 아동복지론 – 청소년복지론 – 사회복지지도감독론 –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 여성복지론 – 사회복지와인권	– 사회문제론 – 정신건강론 – 산업복지론 –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 정신건강사회복지론 – 학교사회복지론 – 교정복지론 – 가족상담및가족치료	– 가족복지론 – 노인복지론 – 자원봉사론 – 의료사회복지론 – 사회보장론 – 장애인복지론 – 사례관리론	4과목 이상 (20학번부터는 7과목 이상)

※ 본교 미개설 과목 : 사회복지역사, 산업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나.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분 야	과 목 명	비 고
사회복지기초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국가시험 합격기준 : 총점의 60% 이상 득점 각 분야의 40% 이상 득점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법제론	

다. 취득 후 진로

사회복지사는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한다. 아동, 장애인, 노인, 여성 가족 복지기관에서 케어, 상담 및 후원 업무 등의 사업을 진행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있고, 지역 저소득계층의 심리적, 경제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있으며, 국가의 공적부조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있다. 좀 더 세부적인 분야로는 학교에서 학교사회사업가로서 학생들을 위한 상담 및 프로그램을 통해 문제해결 및 예방에 도움을 주는 학교사회복지사가 있고, 병원이나 정신보건 현장에서 환자들과 가족들의 심리적, 경제적 문제해결을 위해 일하기도 한다. 또한 기업 사회공헌 활동 및 자원봉사 활동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맡아 활동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으며 각 지역별로 있는 자원봉사 센터에서 자원봉사자관리를 담당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군사회복지, 교정복지, 다문화복지, 기타 사회적 소수자들을 위한 다양한 사회복지 분야 등이 사회복지사들의 활동을 필요로 하는 영역들이다.

17. 보육교사 2급 자격증

가. 응시대상자

보육교사 2급 자격은 아동복지학전공자 또는 아동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졸업자에게 보건복지부(발급처 : 한국보육진흥원)로부터 보육교사 2급 자격이 인정된다.

나. 취득 교과목 일람표(2014학년도 이전 입학자)

구 분	실험실습 교과목명	학점	시수		비 고
			이론	실험실습	
핵심교과군	아동권리와 복지	3	3	–	필수 (기 이수한 유아교육론과 유아교육과정은 인정)
핵심교과군	보육학개론 (종전 유아교육론)	3	3	–	
핵심교과군	영유아발달	3	3	–	
핵심교과군	보육과정 (종전 유아교육과정)	3	3	–	
핵심교과군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학전공 개설과목)	3	3	–	선택
응용교과군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3	2	1	선택
핵심교과군	놀이지도	3	1	2	선택 (4과목 중 3과목을 반드시 수강하여야 자격증이 교부됨)
심화교과군	언어지도	3	1	2	
심화교과군	아동미술	3	1	2	
심화교과군	영유아교수방법론	3	2	1	
심화교과군	아동상담론	3	3	–	선택
심화교과군	아동음악	3	1	2	선택 (기 이수한 아동음악과 동작, 아동 수·과학지도는 인정되며, 2013년도부터는 위의 두 과목이 미개설됨)
심화교과군	아동수학지도	3	1	2	
핵심교과군	아동건강교육	3	1	2	선택 (기 이수한 정신건강론은 인정)
핵심교과군	아동안전관리	3	1	2	
응용교과군	부모교육	3	3	–	선택
심화교과군	가족복지론	3	3	–	선택
핵심교과군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학전공 개설과목)	3	3	–	선택
핵심교과군	자원봉사론 (노인복지학전공 개설과목)	3	3	–	선택
응용교과군	보육실습	3	–	3	필수
계		12과목 36학점 이상 이수			

※ 과목 이수자 전원 발급.

○ **취득 교과목 일람표(2016학년도 입학자까지 적용)**

구 분	교과목명	학점	시수		비 고
			이론	실험실습	
핵심교과군	아동권리와 복지	3	3	–	필수
핵심교과군	보육학개론	3	3	–	필수
핵심교과군	보육과정	3	3	–	필수
응용교과군	보육교사론	3	3	–	필수
핵심교과군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학전공 개설과목)	3	3	–	1과목 이상 선택
응용교과군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3	2	1	
심화교과군	아동상담론	3	3	–	
응용교과군	특수아동이해	3	3	–	
핵심교과군	놀이지도	3	1	2	6과목 이상 선택
심화교과군	언어지도	3	1	2	
심화교과군	아동음악	3	1	2	
심화교과군	아동미술	3	1	2	
심화교과군	아동수학지도	3	1	2	
심화교과군	영유아교수방법론	3	2	1	
핵심교과군	아동건강교육	3	1	2	2과목 이상 선택
핵심교과군	아동안전관리	3	1	2	
응용교과군	정신건강	3	3	–	
응용교과군	부모교육	3	3	–	1과목 이상 선택
심화교과군	가족복지론	3	3	–	
핵심교과군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학전공 개설과목)	3	3	–	
응용교과군	보육실습	3	–	3	필수
계		17과목 51학점 이상 이수			

※ 과목 이수자 전원 발급.

○ **취득 교과목 일람표(2017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구분	교과목명	학점	시수		비고
			이론	실험실습	
핵심교과군	아동권리와 복지	3	3	–	필수
응용교과군	보육교사론	3	3	–	필수
핵심교과군	보육학개론	3	3	–	필수
핵심교과군	영유아발달	3	3	–	필수
핵심교과군	놀이지도	3	1	2	필수
핵심교과군	아동안전관리	3	1	2	필수
핵심교과군	보육과정	3	3	–	필수
심화교과군	영유아교수방법론	3	2	1	필수
심화교과군	언어지도	3	1	2	필수
심화교과군	아동음악(또는 아동미술)	3	1	2	필수
심화교과군	아동수학지도	3	1	2	필수
핵심교과군	아동건강교육	3	1	2	4과목 이상 선택
심화교과군	가족복지론	3	3	–	
핵심교과군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학전공 개설과목)	3	3	–	
심화교과군	아동상담론	3	3	–	
핵심교과군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학전공 개설과목)	3	3	–	
응용교과군	부모교육	3	3	–	
응용교과군	정신건강	3	3	–	
응용교과군	특수아동이해	3	3	–	
응용교과군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3	2	1	필수
응용교과군	보육실습	3	–	3	필수
계		17과목 51학점 이상 이수			

다. 취득 후 진로

영유아·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및 부모 및 가족지원을 위해 보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보육교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진출분야는 한국보육진흥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드림스타트, 직장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등 보육기관, 아동복지기관, 아동상담기관, 아동교육 관련기관, 아동문화기관, 아동관련 핵심 산업체 등이 있다.

18. 청소년지도사 2급 자격증

가. 응시 대상자

대학 졸업(예정)자로서 청소년지도사 2급 자격 검정과목을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에게 국가고시 청소년지도사 2급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2008년 이후 응시하는 경우 자격검정과목을 이수한 청소년학전공 졸업(예정)자는 필기시험이 면제되고 면접만으로 검정한다.

나. 자격검정과목 및 방법

교 과 목 명	학점	검정방법 (기초교과군/핵심 · 심화 · 응용교과군)		
청소년심리	3	핵심교과군	필기시험 면제	면접
청소년활동	3	핵심교과군		
청소년상담(이론과 실제)	3	핵심교과군		
청소년문제와 보호	3	핵심교과군		
청소년지도방법론	3	심화교과군		
청소년프로그램개발과 평가	3	심화교과군		
청소년문화	3	심화교과군		
청소년복지론	3	심화교과군		
청소년육성제도론	3	응용교과군		

다. 취득 후 진로

청소년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의 발달과 적응을 돕고 청소년의 복지와 인권의 증진을 위해 일할 전문가로 국가에서 공인하는 자격증으로서, 취득 후 각종 청소년 기관, 단체,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쉼터, 꿈드림(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진로진학 지원센터, 청소년성문화센터, 사회복지관 등에서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 운영, 단체활동 지도 등을 담당하여 활동하게 된다.

19. 청소년상담사 3급 자격증

가. 목적

청소년기본법에 의거 청소년의 다양한 적응상의 문제들을 전문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상담가를 양성한다.

나. 응시대상자

상담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국가고시 응시 자격을 부여한다.

다. 시험과목

시험과목명	해당 교과목명	학점	구 분	비 고
발달심리	청소년심리	3	핵심교과군	필수시험과목
상담이론	청소년상담(이론과 실제)	3	핵심교과군	필수시험과목
심리측정 및 평가	심리검사	3	심화교과군	필수시험과목
집단상담의 기초	집단상담	3	심화교과군	필수시험과목
학습이론	학습심리	3	심화교과군	필수시험과목
청소년수련활동론	청소년활동	3	핵심교과군	선택과목
계		6과목 18학점		

※ 이수과목이 아니라 시험과목임(필수 5과목, 선택 1과목) – 과목이수를 하지 않아도 청소년학전공자들은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짐.

라. 취득 후 진로

청소년기본법시행령에 따라 청소년상담 전문가에게 주는 국가공인 자격증으로서, 취득 후 전국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진로진학지원센터 등에서 심리적인 어려움과 적응, 발달, 진로 상의 여러 과제들로 고통 받는 청소년들을 상담을 통해 문제에 적절히 대처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상담전문가로 활동하게 될 전망이다.

20.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

가. 목적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등이나 교육훈련기관이나 인력관련기관에서 구인,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취업알선 및 전문적인 컨설팅을 하는 직업상담전문가로 활동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이다.

나. 취득 교과목 일람표

구 분	교 과 목 명	학점	시 수		비 고
			이론	실험실습	
응용교과군	직업세계와 관련 법규	3	3	–	
심화교과군	진로상담	3	3	–	
합 계		2과목 6학점			

다. 취득 방법

1차 필기시험–직업상담학, 직업심리학, 직업정보론, 노동시장론, 노동관계법규 등 5과목(객관식) 2차 직업상담실무(필답식)

라. 취득 후 진로

전문계 고등학교의 진로상담교사, 대학교의 취업지원관, 청소년 진로진학지원센터, 교육훈련기관이나 인력관련기관에서 구인,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취업알선 및 전문적인 직업상담사로 취업이 가능하다.

21. 건강가정사 자격증

가. 개요

건강가정사는 건강가정기본법에 규정된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가로서,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등 관련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게 여성가족부에서 발급하는 국가자격증이다.

나. 취득 요건

구 분	건강가정사
이수학점	전공과목군에서 5과목, 기초이론 군에서 4과목, 상담/교육 실제 군에서 3과목 이상 각각 이수
이수과목	아래표 참조

다. 이수과목

영 역	교 과 목	이수과목
핵심과목	가족복지론, 건강가정론, 가족과젠더, 가족노인생활교육, 가족정책론, 가족상담및가족치료 외	6과목 이상
기초이론	노년학, 노인복지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외	4과목 이상
상담/교육 등 실제	프로그램개발과평가, 사례관리론, 지역사회영양학 외	3과목 이상

◎ 취득방법 : 위의 해당관련 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게 주어짐.

라. 취득 후 진로

자격증 취득 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건강가정사로 활동할 수 있다.

※ 건강가정사는 자격증이 없고 이수확인서(성적증명서)가 자격증(수료증)으로 인정됨

22. 보건교육사 3급 자격증

가. 개요

국민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증진법 제17조 보건교육의 내용을 중심으로 보건교육 프로그램의 기획·운영·평가 등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이다.

나. 취득 교과목 일람표

구 분	교 과 목 명	학점	시수		비 고
			이론	실험실습	
심화교과군	노인보건복지행정론	3	3	–	필수 : 5과목
심화교과군	보건학	3	3	–	
응용교과군	프로그램개발과 평가2	3	2	1	
응용교과군	보건교육학	3	2	1	
응용교과군	보건의료법규	3	3	–	
핵심교과군	노인보건학	3	2	1	선택 : 2과목
심화교과군	지역사회영양학	3	3	–	
계		7과목 21학점			

다. 취득 방법

보건교육 관련 필수 5과목 및 선택 2과목 이상 이수 후, 해당 등급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라. 취득 후 진로

보건소, 학교, 지방자치단체의 건강증진센터 등 공공기관으로 진출 가능하며, 민간분야의 병원, 복지관, 요양시설, 보건관련 기업으로 진출 가능하다.

마. 발급기관

보건복지부

23. 기독교교육사 자격증

가. 개요

교회 및 제 기독교교육기관에서 기독교교육을 전담함과 동시에 교회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 수립과 실천을 담당하는 교회교육 전문인을 양성한다.

나. 취득 요건

이수대상	재학생	
이수학점	기독교교육학전공 주(복수・부)전공자	졸업자에 한하여 전원 발급 ※ 별도 신청 없이 자동 발급함
	기독교교육학전공 비전공자	기독교교육학 전공과목 10학점 이상 이수한 자
신청시기	4학년 2학기 말(별도 공지 참조)	
신청서류	기독교교육사자격증 발급신청서(소정양식) 1부	

다. 이수과목 안내

기독교학부 기독교교육학전공에 개설된 전공과목 중 1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학부기초 제외)

라. 발급 기관

백석대학교 및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24. 상담교육사 자격증

가. 개요

목회자의 상담적 기능을 돕고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과 교사를 위한 상담자로서 목회자의 지도 아래 교회의 전반적 상담 프로그램 기획, 교사와 상담지원 봉사자들을 교육시키는 전문인을 양성한다.

나. 취득 요건

이수대상	재학생	
이수학점	기독교상담학전공 주(복수・부)전공자	졸업자에 한하여 전원 발급 ※ 별도 신청 없이 자동 발급함
	기독교상담학전공 비전공자	기독교상담학 전공과목 10학점 이상 이수한 자
신청시기	4학년 2학기 말(별도 공지 참조)	
신청서류	상담교육사자격증 발급신청서(소정양식) 1부	

다. 이수과목안내

기독교학부 기독교상담학전공에 개설된 전공과목 중 1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학부기초 제외)

라. 발급 기관

백석대학교 및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25. 상담심리지도사 1급 자격증

가. 개요

상담심리지도사라 함은 상담학과나 기타 관련학과에서 상담을 전공하고 학위를 받은 자로서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회가 규정한 교육과정을 4년제 혹은 2, 3년제 대학 해당학과에서 이수하고 소정의 검정 절차를 통과한 자를 말한다.

나. 취득 요건

이수대상	기독교상담학전공 주(복수)전공자
이수학점	상담학 관련 6과목 18학점(필수 1과목, 필수선택 2과목, 기타 일반선택영역을 포함하여 6과목)
신청시기	졸업학기(8학기) 종강 전 협회에서 지정한 기간(기독교학부사무실)
신청서류	상담심리지도사 자격심사신청서(소정양식) 1부, 성적증명서 1부, 졸업예정증명서 1부

다. 이수과목 안내

구 분	영역별 과목	유 사 과 목
필수	① 상담 및 지도	개인 상담, 상담심리학, 상담이론, 상담자 교육 및 슈퍼비전, 아동상담, 청소년 상담, 노인상담, 생활지도, 상담실습 및 사례연구, 기독교상담
필수 선택	② 검사 및 진단	교육심리검사론, 교육심리평가,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심리검사, 심리측정 평가의 활용, 심리측정이론, 심리평가, 진로심리검사, 상담연구방법
	③ 가족	가족상담, 가족치료, 가족관계, 가족복지, 가족복지 및 노인 간호, 가족발달이론, 가족생활주기, 가족생태학, 가족역동, 결혼과 가족, 가족학, 부모학, 아동학, 여성학, 노년학
	④ 집단상담	집단상담이론, 집단상담연구, 집단상담의 이론과 실제, 집단심리
	⑤ 성격	사회심리학, 성격심리학, 성격이론, 인간관계, 인간의 이해, 인간행동과 사회 환경
일반 선택	⑥ 발달	발달심리학, 발달장애, 사회정서발달, 성인·노인발달, 아동발달론, 인간발달, 인간발달연구, 영유아발달, 청소년발달, 아동심리학
	⑦ 학습	교육심리학, 인지학습, 학교심리학, 학습심리학, 학습이론
	⑧ 진로	생애 및 진로지도, 진로상담이론, 진로지도론
	⑨ 정신건강	임상심리, 건강심리학, 정신건강, 아동건강교육, 아동정신의학, 이상심리학, 의료사회복지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정신병리와 치료

※ 필수영역 1과목 이상, 필수선택영역 4개 중 2개 영역에서 각각 1과목 이상, 기타 일반선택영역을 포함하여 총 6과목 이상의 상담 관련 과목을 이수.

라. 발급기관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회

26. 인성개발지도사 1, 2급 자격증

가. 개요

인성개발지도사 1/2급 자격과정은 2014년 10월부터 한국직업능력개발원(KRIVET) 민간자격증으로 등록되어 운영 중이다. 교육부는 인성교육진흥법(2015. 7월 시행) 제정과 함께 모든 교육정책의 근간을 인성교육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사회 각 실무현장에서 사회 요구적 기술로서의 인성 함양을 위한 재학생들의 적극적 참여가 요구된다.

① 자격정보

<table>
<tr><td>자 격 명</td><td>인성개발지도사</td><td>자격의 종류</td><td>등록민간자격</td></tr>
<tr><td>등록번호</td><td>2014-4847</td><td>자격 발급기관</td><td>백석대학교</td></tr>
<tr><td>총 비 용</td><td>• 2급: 97만원
– 연수비: 90만원, 검정/발급: 7만원
• 1급: 102만원
– 연수비: 95만원, 검정/발급: 7만원</td><td rowspan="2">환불규정</td><td rowspan="2">• 교육비: 교과수업
• 연수비
– 접수 마감 전까지 100% 환불
– 연수 시작 당일부터는 예약 및 위약금 발생으로 인하여 환불 불가
• 검정비: 접수마감 전까지 100% 환불되나, 검정당일 취소 30% 공제 후 환불
• 발급비: 합격자에 한하여, 자격증 제작 및 발송 이전까지 100% 환불되나, 이후 취소시 환불 불가</td></tr>
<tr><td>자격관리 기관정보</td><td>• 기관명: 백석대학교
• 대표자: 장종현
• 연락처: 041-550-2461
• 이메일: kgh7604@bu.ac.kr
• 소재지: 충남 천안시 동남구 백석대학로 1-5</td></tr>
<tr><td>알림사항</td><td colspan="3">• 상기 “인성개발지도사”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의 ‘민간자격 소개’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td></tr>
</table>

② 과정소개 : 인성개발원은 아동, 청소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인성과 관련한 교육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연령 및 대상에 따른 맞춤형 인성교육을 지도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획, 운영, 평가 등 프로그램을 운영 할 수 있는 인성교육 전문가를 양성한다.

나. 취득 요건 : ① 교육과정 이수 ② 자격검정시험 합격 ③ 자격증 발급신청

<table>
<tr><td>이수대상</td><td colspan="4">재학생</td></tr>
<tr><td rowspan="4">이수과목</td><td>교과목명</td><td>학점</td><td>관련 자격</td><td>비고</td></tr>
<tr><td>인성과 대인관계</td><td>2</td><td rowspan="2">• 백석인증서
• 대인관계역량 연수 수료증
• 교내 봉사시간
• BU-Point</td><td rowspan="2">• 인성개발지도사 2급 자격연수과정(3주)
※ 연수비용 및 자격 취득비용 별도</td></tr>
<tr><td>인성과 기업가정신</td><td>2</td></tr>
<tr><td>인성과
세계시민질서</td><td>2</td><td>• 인성교육실습기관 위촉장</td><td>• 인성개발지도사 1급 자격 연수과정
※ 연수비용 및 자격 취득비용 별도
• 천안지역 초·중·고교 인성교육실습</td></tr>
<tr><td>자격시험</td><td colspan="4">• 위 과정(교과목/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자격 검정 실시
• 자격검정시험응시 후 총점의 60% 이상 득점</td></tr>
<tr><td>자격증신청</td><td colspan="4">인성개발지도사 자격증신청서(소정양식) 1부</td></tr>
</table>

다. 취득 후 진로

인성교육지원센터, 청소년기관, 교육기관, 상담기관, 평생교육기관, 사회복지복지 센터, 기업에서 인성교육 지도사, 인성교육 및 인성지도관련 활동 등